# 韓國 法學敎育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김 욱 곤*
박 길 준**

Ⅰ. 序 言
Ⅱ. 法學敎育의 目的
1. 法學敎育의 根本理念과 그 認識의 重要性
2. 法學敎育의 具體的 目的
(1) 職業敎育論과 敎養敎育論
(2) 二元的 目的論
(3) 結 論
Ⅲ. 現行 學制下에서의 改善方案
1. 敎科課程의 改編
2. 敎育方法의 改善
Ⅳ. 學制의 改革
1. 敎育年度의 延長
2. 學科 再編成의 문제
Ⅴ. 國家考試 制度의 改革
1. 現行 司法試驗 制度의 問題點
2. 外國의 司法試驗 制度
3. 司法試驗 制度의 改善方向
4. 行政考試 制度
Ⅶ. 餘 論
1. 大學院 敎育
2. 學生活動과 法律相談
Ⅶ. 結 言

## Ⅰ. 序 言

우리나라 法學敎育의 跛行的 現象에 대한 反省과 이에 대한 改善方案의 論議가 本格化된지도 이미 10여년이 된다. 그동안 주로 法學敎授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論議를 통하여 問題點의 指摘과 改善方向의 摸索이 있었으며 나아가 수차례의 구체적인 代案의 提示도 있었다[1]. 그러

* 法經大學 法學科 副敎授
** 法經大學 法學科 副敎授

1) 學制 改編에 관한 最初의 主張은 1955年 兪鎭午博士의 硏究에서 비롯한다. (兪鎭午, 『法科大學의 改編을 위한 試論』, 法政, 1955年 3月號.) 그러나 法學敎育을 中心으로 한 集約的 硏究는 1963年 來韓했던 美國人 Jay Murphy 敎授의 著書 "Legal Education in a Developing Nation: The Korea Experience" (1967) (이 冊은 1967年 梁承圭·朴吉俊교수에 의해 『韓國法學敎育』이란 題目으로 共譯되었다.)들 계기로 本格化 되어, 以後 韓國法學敎授會에서도 1967년 4월 忠南大에서의 「法學敎育과 司法試驗에 관한 세미나」(이 세미나에 관한 報告書의 全文은 考試界 1967년 6월, 7월호에 게재되어 있다.)를 비롯한 수차의 討論會들 가졌고 1971年에는 韓國法學敎授會編으로 「韓國의 法學敎育」이라는 冊字들 發刊하였다. 또한 1971年에는 서울法大 法學敎育硏究委員會에서 「法學敎育 改善方案에관한 硏究」라는 구체적 代案의 提示가 있었고(이것은 上記 「韓國의 法學敎育」이라는 冊字의 末尾에 수록되어 있다.), 1974년 1월에는 韓國法學院의 주최로 「法學敎育 國際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報告書는 韓國法學院, 저스티스 제12권 제1호에 수록되어 있다.) 가장 最近으로는 1975년 12월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 그간의 諸論議들 종합·요약함과 아울러 關聯分野에 대한 意見調査들 시도하여 「法學敎育의 改善方向」이라는 硏究들 발표하였다. (이것은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法學 第16卷 2號에 수록되어 있다.)

나 이러한 努力의 傾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다 할 改善을 成就하지 못했던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茂盛했던 論議에 비해 改善의 成果는 別無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努力이 별다른 實效를 못 보았던 障碍要因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要因이 있다면 이를 除去할 수 있는 現實的이고 具體的인 努力은 어디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가, 또한 종래의 改善方案 자체에 再考할 문제는 없는가. 問題가 複合的이고 相互聯關的이고 全體的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손을 대야 할 部門은 없을 것인가. 法學敎育의 改善方案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論議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다시 再論해야 할 所以는 바로 이러한 물음들에서 시작한다.

그 동안의 論議를 통하여 우리 法學敎育의 缺陷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① 法曹人의 資質을 갖추기 위하여는 專門的인 法學分野 이외에도 人文社會科學 全般에 대한 폭넓은 知識과 敎養이 필요한 데 現在의 敎育年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② 現在의 敎科課程은 어떠한 뚜렷이 設定된 目的에 부합되도록 編成된 것이 아니라 日帝時代 이래의 답습에 불과하며 司法試驗 科目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③ 敎育方法에 있어서 注入式 講議方法에 시종하여 學生들의 創意性과 應用力을 길러주지 못했으며 學校敎育을 外面하고 獨學으로 試驗準備만 하는 學生들도 적지 않았었다는 점이다[2]. 따라서 改善方案의 重點도 ① 敎育年限의 延長 ② 敎科課程의 改編 ③ 敎育方法의 改革의 세가지에 주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論議의 核心을 이루었던 것은 敎育年限 延長論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司法試驗을 비롯한 國家考試制度와 相互制約的 相互影響의 關係에 있는 만큼 考試制度의 不合理性의 指摘과 그 改革의 論議와 아울러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考試制度의 改革問題는 法曹界를 포함한 司法制度 전체에 直結된 문제이고 따라서 見解의 對立 내지 利害衝突이 심각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法學者들의 改善意志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法學者들의 諸論議는 法學敎育이 지나치게 考試制度에 一方的으로 끌려다닐 수 없으며 主體的 積極的으로 解決의 方向을 찾아야한다는 見地에서 改善方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能動的 자세는 지극히 바람직한 것으로 더욱 더 推進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反面 周知하는 대로 改善의 成果는 별로 없었음이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諸論議와 代案에 대하여 實踐的 觀點에서 再考할 必要를 느낀다. 即 모든 改善對象의 問題點들이 모두 考試制度를 비롯한 法學敎育界 外的인 要因과 直結된 문제들이기는 하지만, 問題에 따라서는 法學敎育界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主導할 수 있는 부문이 있고 反面 考試制度등 外的要因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향받는 부문이 있지 않는가 하는 問題意識이다. 이러한 區分은 實踐的 觀點에서 意義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렇게 볼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 제도 연구위원회, 『法學敎育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韓國의 法學敎育(韓國 法學敎授會編), p. 324 참조.

때 改善對象의 問題는 ① 現行 學制下에서도 改善可能한 것과 ② 學制 및 考試制度의 根本的 改革을 前提로 하는 것을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敎育內容과 敎育方法의 문제가 前者에 속한다면 敎育年限 延長을 비롯한 制度改革의 문제는 後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前者인 敎育內容·方法의 改善論이 考試制度의 不合理點의 일부분에 대한 改革을 誘導할 수 있는 部門이라면 後者인 敎育年限 延長論은 必然的으로 考試制度의 改革이나 최소한 修正이라도 前提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일 것이다. 요컨대 實踐的 觀點에서 보아 前者가 당장 손을 대야하고 또한 成果를 기대할 수 있는 部門이라면 後者는 두고 두고 障碍要因을 除去해 나아가면서 長期的으로 解決을 推進해야 할 部門이라고 하겠다. 물론 前者이든 後者이든 모두 相互聯關된 문제이며, 또한 어느 것이나 利害衝突과 軋轢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만 實踐的인 觀點에서 볼 때 相對的으로 그러한 區分이 가능하다는 것 뿐이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이 硏究는 ① 現行 學制下에서도 改善可能한 문제로서의 敎育內容 및 敎育方法 改善論과 ② 學制 및 考試制度의 改革을 前提한 改善方案으로 區分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具體的인 諸問題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諸論議를 批判的으로 綜合, 檢討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바람직하건대는 各 問題點에 대한 關係 各界의 意見調査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이것은 좀 더 有機的인 綜合的 機構에 의하여 體係的으로 또 가능한 限 全關係人을 대상으로 행하여질 性質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現行 學制下에서의 改善方案에 있어서도 長期的인 根本的 改革案에 있어서든 단지 바람직한 理想的 制度像의 定立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의 實現을 沮害하는 現實的인 障碍 要因을 除去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러한 問題點에 대해서도 留意할 것이다. 그러한 障碍要因으로서는 ① 敎育內容 및 敎育方法의 改善에 있어서는 人的·物的 施設에 관한 大學 運營上의 問題點, ② 學制 및 考試制度의 改革에 있어서는 關係 各界間의 意見對立 및 學生, 一般人의 社會意識, 그리고 敎育費 負擔의 增加問題 등이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 Ⅱ. 法學敎育의 目的

法學敎育의 改善方案에 대한 論議는 우선 法學敎育의 目的을 어디에 設定하느냐 하는데에서 出發한다. 具體的인 敎育年限·學科編成·敎科目·敎育方法등 諸問題의 解決方向은 敎育目的을 어디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法學敎育의 目的에 관한 지금까지의 諸論議는 그 具體的인 現實的 目的設定에 集中되어온 感이 없지 않다. 即 法學敎育의 具體的 目的이 法曹人 養成을 위한 職業敎育에 있는가, 아니면 法律 中心의 一般社會科學의 習得을 위한 一般 敎養敎育에 있는가 또는 法曹人뿐만 아니라 널리 準法曹人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法律專門家의 養成을 위한 二元的 目的에 있는가 하

는 問題가 論議의 核心이 되어온 것 같다. 이것은 具體的 目的을 어디에 設定하느냐 하는 問題가 具體的인 諸問題, 특히 敎育年限과 관련한 敎養·專攻 課程의 構成比 및 敎科目編成등에 直結된 것인 만큼 當然하고 妥當하다. 다만 여기에서 指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러한 具體的 敎育目的에 관한 論議와 아울러 그에 先行하는 問題로서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에 대한 명확한 認識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點이다. 물론 具體的 目的과 區別되는 바의 理念에 관한 論議가 일찍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의 重要性에 대한 철저한 認識은 부족했던 것 같다.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의 問題는 단순히 抽象的 單語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確固한 認識이 前提되지 아니하는 限 法學敎育 및 司法試驗制度의 根本的 改革을 통한 法曹 全體의 改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這間의 수많은 法學敎育 改善案이 案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없었던 要因의 하나는 이에 反對하는 사람들의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에 대한 沒覺인 것 같다. 根本理念에 대한 올바른 問題意識이 先行되지 않는 한, 法學敎育 改善問題에 대한 閉鎖的 思考方式은 불식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기껏 枝葉的 내지 技術的 問題의 論議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法學敎育의 具體的 目的에관한 문제도 根本理念의 문제와 관련시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한, 職業敎育이냐 敎養敎育이냐 하는 問題도 相互對立的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相互有機的이고 統一的인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法律家像의 定立에 따라서는 兩者는 分離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새로운 問題意識 아래 이들 問題에 관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1. 法學敎育의 根本理念과 그 認識의 重要性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에 관한 問題意識은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다. 이에 관하여 일찌기 우리나라 法學敎育에 대한 反省의 契機를 만들어 주었던 Jay Murphy 敎授는 그의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資料와 意見을 繼續的으로 綜合하여 確認한 것은 韓國 民主主義制度의 確立과 强化에 法學敎育이 直接的이고 正確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關係에서 法學敎育은 社會 建設의 道具로 完全히 活用되기만 하면, 韓國의 社會建設에 貴重한 媒介物인 同時에 必須不可缺한 要素가 될 것이다. ……"[3]

이와 같이 Murphy 敎授는 韓國 法學敎育의 理念을 우리나라 社會의 民主的 發展에 두고 있다. 이같은 認識은 1967년 4월에 忠南大에서 개최된 韓國法學敎授會 세미나에서의, 李太載 敎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한 表現을 얻고 있다.

(3) Jay Murphy, 梁承圭·朴吉俊共譯, 韓國法學 敎育, p. 21.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法學敎育은 모든 國民이 法治主義에 대한 깊은 理解로서 法의 支配(Rule of Law)가 現實生活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資質을 培養케 하는 데 있는 것이다."[4]

또한 徐燉珏 敎授도 1971년의 韓國 法學敎授會編의 册字『韓國의 法學敎育』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司法機構의 民主化와 그를 통한 司法正義의 實現이야말로 우리 社會의 民主主義 諸價値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이며 우리 社會의 民主主義를 위한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의 하나라고 외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民主主義制度의 確立을 위하여 司法正義의 見現이 不可缺한 것이라면, 司法正義實現의 담당자인 넓은 의미의 法曹人을 敎育·養成하는 法學敎育 또한 民主主義的 目的에 봉사하는 주요 部門이 아닐 수 없다. ……

法曹敎育뿐만 아니라, 오늘날 法學敎育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敎養 法學敎育에 있어서도 그 成功 여부는 法의 支配(Rule of Law)의 原理를 관철시키는 社會勢力을 形成시키고 法意識을 高揚·發展시킴으로써 또한 民主社會의 形成過程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法學敎育은 그러니까 그것이 法曹敎育에 몰두하든 그렇지 않으면 敎養으로서의 法學敎育까지 포괄하든 간에, 이와 같이 한 나라 한 사회의 民主主義의 確立내지 社會改造에 충실한 奉仕役割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5]

위와 같은 諸論議를 종합해 보면 요컨대 法의 生活化 내지 大衆化를 통하여 民主主義的 法制度와 法治主義를 實現하는데에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이 있다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에 대한 認識의 重要性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抽象的인 理念設定만으로 그칠 것은 아니며 모든 具體的 諸問題의 解決을 위한 出發點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法學敎育의 跛行的 現象에 대한 가장 큰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는 考試制度의 改革에 대하여 사실상 決定的인 反對勢力으로 알려져 있는 旣成 法曹界의 態度는 과연 法學敎育의 理念에 대한 확고한 認識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法의 大衆化라는 民主的 理念과는 逆으로 日本 植民地時代의 官僚的, 閉鎖的 特權意識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學生들이나 學父母들의 立場에서도 그들의 欲求가 과연 이같은 理念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權力機構에 參與하겠다는 意識이 支配的인 것은 아닌가. 法學敎授들로서도 敎育內容이나 敎育方法에 있어서 이러한 理念을 충분히 反映시켰다고 할 수 있는가. 아직도 日帝時代의 그것을 舊態依然히 답습하는 面은 없는가. 法學敎育의 改善을 沮害하는 根本要因은 法내지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에 대한 認識의 不

(4) 考試界, 1967년 6월호.
(5) 同書, pp. 6—8.

撤底에서 구하여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2. 法學敎育의 具體的 目的

法學敎育의 具體的 目的에 관한 종래의 論議는 ① 職業敎育論, ② 敎養敎育論 및 ③ 二元的 目的論의 세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1) 職業敎育論과 敎養敎育論

職業敎育論에 의하면 法學敎育은 法曹人養成을 위한 職業敎育(Professional education)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6] 이것은 歐美的 司法制度의 導入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으로 一般的인 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敎養敎育論에 의하면 大學學部課程(undergraduate course)에서의 法學敎育은 專門的인 職業敎育일 필요가 없고 널리 敎養法學을 習得하는 敎養敎育 (liberal education)에 그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實情을 감안하여 法學敎育의 目的을 法律을 中心으로 한 一般 社會科學 즉 一般敎養의 함양에 둘 것을 주장하며[7], 法曹人 養成을 위하여는 다른 專門機關에서 다시 職業敎育이 필요하다고 한다.

(2) 二元的 目的論

法學敎育 目的論에 관한 近來의 支配的인 견해는 職業敎育및 敎養敎育의 二元的 目的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法學敎育의 目的 設定에는 法學敎育에 대한 社會的 需要, 大學敎育으로서의 法學敎育 및 職業敎育으로서의 法學敎育등 諸要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를 集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 제도 연구위원회의 『法學敎育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1971)를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확실히 歐美 先進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法學敎育은 法律 專門家의 養成을 指向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敎育目的을 이러한 方向으로 設定할 때에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現實問題에 直面하게 된다. 예컨대 被敎育者인 學生들이 반드시 專門 法律家가 될 것을 욕구하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종래와 같이 行政官廳·金融機關 기타 企業體등으로 進出할 것이며, 더구나 法律家가 되기 위한 關門인 司法試驗의 制度上·運用上의 缺陷에서 실제로 專門 法律家가 될 수 있는 사람은 極少數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法學敎育이 專門的 職業敎育을 중심으로 하면서 一般敎養으로서의 法學敎育까지도 포괄적으로 指向하여야 된다고 結論짓게 된다. 요컨대 우리의 法學敎育은 구체적로 判事·檢事·辯護士는 물론 각 行定官廳의 法務官 내지 法務擔當 公務員, 司法書士, 稅務士, 國會의 法制擔當 公務員은 물론 金融機關 기타 企業體등의

(6) 權泰埈, 「法學敎育目的論」, 8ides 제15권 1호, pp. 9—12.
(7) 金曾漢·金箕斗·李英爕, 座談會, 「現行 法學敎育과 司法試驗의 再檢討」, 法政, 1967년 8월호, pp. 9—11.

法律的 素養을 필요로 하는 간부급 職責등의 社會的 需要에 副應하여 各 部門別로 필요한 知識과 專門技術을 習得토록 하는 것으로 넓게 敎育目的을 設定하여 두고자 한다.[8]

위의 견해는 요약컨대 우리나라 法學敎育의 目的이 좁은 의미의 法曹人뿐만 아니라 各界各層의 準法曹人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法律專門家의 養成에 있다는 것이다.

(3) 結　論

二元的 目的論이 좁은 의미의 法曹人의 養成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法律 專門家의 養成에 法學敎育의 目的을 設定하는 것은 우리의 現實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法學敎育이 단순한 敎養敎育에 그친다면 이는 결국 法曹 實務者의 養成을 獨學으로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한 法曹敎育에 맡기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法學敎育의 目的은 넓은 의미의 法律專門家의 養成을 위한 職業敎育에 設定하여야 할 것으로 된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의 法學敎育이 특히 美國의 경우에는 달리 學部課程과 分離된 大學院 課程의 것이 아닌만큼 職業敎育으로서의 우리의 法學敎育이 단순히 法律 技術 敎育으로 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敎養敎育의 側面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敎養敎育이란 職業敎育에 對立하는 意味에서가 아니라 職業敎育으로서의 法學敎育이 단순한 技術敎育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職業敎育을 善導하고 기초짓는다는 의미에서의 敎養敎育이다. 이러한 의미의 敎養敎育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法學의 隣近 科學으로서의 社會學·政治學·經濟學·心理學등의 敎育이다. 이러한 敎育을 통하여서만이 社會안에서의 法의 位置를 파악하고 法을 밖으로부터 批判的으로 볼 수있는 能力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法律專門家의 養成은 물론, 좁은 의미의 法曹人을 養成한다는 것도 단순히 法自體의 體系的 知識뿐만 아니라 法의 社會的·經濟的·政治的·哲學的 背景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法律 專門家는 단순한 法律技術者 내지 法律適用者에 머무르지 않고 法을 밖으로 부터 批判하고 法의 限界까지도 認識할 수 있는 法定立者의 位置까지 高揚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法學의 對象인 法이라는 것이 社會的 諸關係로 부터 分離될 수 없고 그 一部分으로서 形成되고 變貌되어 간다는 데에 근본적으로 基因한다.[9]

이와같이 우리의 法學敎育의 目的은 좁은 의미의 法曹人뿐만 아닌 넓은 의미의 法律 專門家의 養成을 위한 職業敎育이되 여기에서의 職業敎育은 단순한 技術敎育과 달리 隣近 社會科學을 中心한 敎養敎育의 土臺위에 基礎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제도 연구위원회, 前揭, pp. 325—6.
(9) 金亨培, 「法科大學의 敎科課程」, 上揭, pp. 95—6 참조.

## Ⅲ. 現行 學制下에서의 改善方案

法學敎育 改善에 관한 종래의 諸論議에 있어서 核心을 이루어 온것은 敎育年限 延長論이었다. 이것은 敎育年限을 延長하는 것이 法學敎育의 諸矛盾을 解決하기 위한 制度的 前提條件이라는 認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認識은 뒤에서 詳論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지극히 妥當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敎育年限 延長論이 10년가까이 壁에 부딪쳐 온 것을 감안할 때 現行 四年制 學制下에서도 改善 可能한 方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法學敎育의 實質的 內容, 즉 敎科課程(Curriculum)과 講義方式을 改善하는 길이다. 이것은 法學敎育의 實質的 內容의 문제가 論理上 敎育年限을 비롯한 學制의 문제에 직결된 것임을 看過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며, 다만 序論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實踐的 觀點에서 現時點에서 可能한 모든것을 實現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認識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敎育內容이나 敎育方法에 관해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改善된 것이 적지 않으나 명확한 基準에 근거한 再考가 필요하다.

### 1. 敎科課程의 改編

(1) 現行 敎科課程의 實例

우리나라 法科大學 또는 法學科의 現行 敎科課程의 몇몇 實例를 보면 다음 諸表와 같다.

〈表 1〉 서울대학교 法科大學의 敎科課程

舊 敎科課程(法學科單一學科)

(1975. 6. 改正)

(1975年 2學期 進入生부터 1976年 2學期까지 適用)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目名 | 學點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目名 | 學點 |
|---|---|---|---|---|---|---|---|---|---|
| 2 | 2 | 敎養必須 | 體育 | 1 | 3 | 1 | 敎養必須 | 敎練 | 1 |
| | | 〃 | 敎練 | 1 | | | 專攻必須 | 物權法 | 3 |
| | | 專攻必須 | 憲法：基本權論 | 3 | | | 〃 | 債權法 I | 3 |
| | | 〃 | 民法總則 | 3 | | | 〃 | 會社法 | 3 |
| | | 〃 | 商法總則, 商行爲法 | 3 | | | 〃 | 刑法各論 | 3 |
| | | 〃 | 刑法總論 | 3 | | | 〃 | 行政法一部 | 3 |
| | | 〃 | 國際法一部 | 3 | | | 〃 | 國際法二部 | 3 |
| | | 專攻選擇 | 로마法 | 1 | | | 專攻選擇 | 英美法原講 I | 2 |
| | | 〃 | 西洋法制史 | 3 | | | 〃 | 獨法原講 I | 2 |
| | | 〃 | 法律思想史 | 3 | | | 〃 | 佛法原講 I | 2 |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
| 3 | 2 | 敎養必須 | 敎 練 | 1 |
| | | 專攻必須 | 債權法 Ⅱ | 3 |
| | | 〃 | 有價證券法 | 3 |
| | | 〃 | 行政法二部 | 3 |
| | | 〃 | 民訴一部 | 3 |
| | | 〃 | 刑事訴訟法 | 3 |
| | | 專攻選擇 | 憲法：統治機構論 | 3 |
| | | 〃 | 英美法原講 Ⅱ | 2 |
| | | 〃 | 獨法原講 Ⅱ | 2 |
| | | 〃 | 佛法原講 Ⅱ | 2 |
| 4 | 1 | 專攻必須 | 親族相續法 | 3 |
| | | 〃 | 保險・海商法 | 3 |
| | | 〃 | 稅 法 | 3 |
| | | 〃 | 勞動法 | 3 |
| | | 〃 | 民訴二部 | 3 |
| | | 專攻選擇 | 經濟法 | 3 |
| | | 〃 | 憲法演習 | 2 |
| | | 〃 | 民事法演習 | 2 |
| | 2 | 專攻必須 | 法哲學 | 3 |
| | | 專攻選擇 | 社會保障法 | 3 |
| | | 〃 | 涉外私法 | 3 |
| | | 〃 | 刑事政策 | 3 |
| | | 〃 | 韓國法制史 | 3 |
| | | 〃 | 行政法演習 | 2 |
| | | 〃 | 刑事法演習 | 2 |
| | | 〃 | 商事法演習 | 2 |
| | | 〃 | 勞動法演習 | 2 |
| | | 〃 | 國際法演習 | 2 |

新 敎科課程
(1977年 3月 進入生부터 適用)

| | | | | |
|---|---|---|---|---|
| 2 | 1 | 專攻必須 | 憲法：基本權論 | 3 |
| | | 〃 | 民法總則 | 3 |
| | | 〃 | 刑法總則 | 3 |
| | | 〃 | 國際法 Ⅰ | 3 |
| | | 專攻選擇 | 로마法 | 3 |
| | | 〃 | 法律思想史 | 3 |
| | | 〃 | 英美法 Ⅰ | 2 |
| | | 〃 | 獨法 Ⅰ | 2 |
| | | 〃 | 佛法 Ⅰ | 2 |
| | | 一般選擇 | 法心理學 | 2 |
| | | 〃 | 政治思想史 | 3 |
| | | 〃 | 經濟原論 | 3 |
| | | 〃 | 經濟史 | 3 |
| | | 〃 | 西洋政治史 | 3 |
| | | 〃 | 行政學 | 3 |
| 2 | 2 | 專攻必須 | 物權法 | 3 |
| | | 〃 | 商法總論 | 3 |
| | | 〃 | 行政法 Ⅰ | 3 |
| | | 〃 | 刑法各論 | 3 |
| | | 專攻選擇 | 西洋法制史 | 3 |
| | | 〃 | 英美法 Ⅱ | 2 |
| | | 〃 | 獨 法 Ⅱ | 2 |
| | | 〃 | 佛 法 Ⅱ | 2 |
| | | 一般選擇 | 貨幣金融論 | 3 |
| | | 〃 | 經營原論 | 3 |
| | | 〃 | 會計學 | 3 |
| 3 | 1 | 專攻必須 | 債權法 Ⅰ | 3 |
| | | 〃 | 會社法 | 3 |
| | | 〃 | 行政法 Ⅱ | 3 |
| | | 〃 | 民事訴訟法 Ⅰ | 3 |
| | | 〃 | 勞動法 | 3 |
| | | 專攻選擇 | 涉外私法 | 3 |
| | | 〃 | 經濟法 | 3 |
| | | 〃 | 物權法特講 | 3 |
| | | 一般選擇 | 韓民外交史 | 3 |
| | | 〃 | 財政學 | 3 |
| | | 〃 | 調査方法論 | 3 |
| | 2 | 專攻必須 | 債權法 Ⅱ | 3 |
| | | 〃 | 有價證券法 | 3 |
| | | 〃 | 民事訴訟法 Ⅱ | 3 |
| | | 〃 | 刑事訴訟法 | 3 |
| | | 〃 | 國際法 Ⅱ | 3 |
| | | 專攻選擇 | 憲法：統治機構論 | 3 |
| | | 〃 | 韓國法制史 | 3 |
| | | 〃 | 會社法特講 | 3 |
| | | 〃 | 行政法特講 | 3 |
| | | 一般選擇 | 經濟學史 | 3 |
| 4 | 1 | 專攻必須 | 親族法 | 3 |
| | | 〃 | 保險・海商法 | 3 |
| | | 〃 | 稅 法 | 3 |
| | | 〃 | 法哲學 | 3 |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
| 4 | 1 | 專攻選擇 | 刑事政策 | 3 |
| | | 〃 | 憲法演習 | 3 |
| | | 〃 | 民事法演習 | 3 |
| | | 〃 | 勞動法特講 | 3 |
| | | 〃 | 國際去來法特講 | 3 |
| | | 一般選擇 | 經濟政策 | 3 |
| | | 〃 | 經濟發展論 | 3 |
| | | 〃 | 政治哲學 | 3 |
| | 2 | 專攻選擇 | 相續法 | 3 |
| | | 〃 | 社會保障法 | 3 |
| | | 〃 | 行政法演習 | 3 |
| | | 〃 | 刑事法演習 | 3 |
| | | 〃 | 商事法演習 | 3 |
| | | 〃 | 勞動法演習 | 3 |
| | | 〃 | 國際法演習 | 3 |
| | | 〃 | 稅法演習 | 3 |
| | | 一般選擇 | 景氣變動論 | 3 |
| | | 〃 | 地域開發論 | 3 |

〈表 2〉 慶北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科의 敎科課程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
| 1 | 1 | 필 수 | 민법 Ⅰ | 3 |
| | 2 | 필 수 | 민법 Ⅱ | 3 |
| | | 〃 | 헌법 | |
| 2 | 1 | 필 수 | 형 법 Ⅰ | 3 |
| | | 〃 | 민 법 Ⅲ—1 | 3 |
| | | 〃 | 국제법 Ⅰ | 3 |
| | | 〃 | 행정법 Ⅰ | 3 |
| | | 선 택 | 영어원강 | 1 |
| | | 〃 | 독어원강 } 택일 | 1 |
| | | 〃 | 불어원강 | 1 |
| | | 〃 | 로마법 | 3 |
| | | 〃 | 비교헌법 | 3 |
| | | 〃 | 영미법 | 2 |
| | 2 | 필 수 | 형 법 Ⅱ | 3 |
| | | 〃 | 국제법 Ⅱ | 3 |
| | | 〃 | 노동법 Ⅰ | 3 |
| | | 〃 | 민 법 Ⅲ—2 | 3 |
| | | 〃 | 공법연습 Ⅰ | 1 |
| | | 〃 | 상 법 Ⅰ | 3 |
| | | 선 택 | 행정법 Ⅱ | 3 |
| | | 〃 | 법률사상사 | 2 |
| | | 〃 | 영어원강 | 1 |
| | | 〃 | 독어원강 } 택일 | 1 |
| | | 〃 | 불어원강 | 1 |
| 3 | 1 | 필 수 | 민 법 Ⅳ | 3 |
| | | 〃 | 상 법 Ⅱ | 3 |
| | | 〃 | 노동법 Ⅱ | 3 |
| | | 〃 | 공법연습 Ⅱ | 1 |
| | | 〃 | 민사소송법 Ⅰ | 3 |
| | | 〃 | 형사소송법 | 3 |
| | | 선 택 | 영어원강 | 1 |
| | | 〃 | 독어원강 } 택일 | 1 |
| | | 〃 | 불어원강 | 1 |
| | | 〃 | 민사특강 | 3 |
| | | 〃 | 법률실무 Ⅰ | 3 |
| | | 〃 | 헌정사 | 2 |
| | 2 | 필 수 | 상 법 Ⅲ | 3 |
| | | 〃 | 민사소송법 Ⅱ | 3 |
| | | 〃 | 형사연습 Ⅰ | 1 |
| | | 〃 | 상법연습 Ⅰ | 2 |
| | | 〃 | 민법연습 Ⅰ | 2 |
| | | 선 택 | 영어원강 | 1 |
| | | 〃 | 독어원강 } 택일 | 1 |
| | | 〃 | 불어원강 | 1 |
| | | 〃 | 헌법특강 | 2 |
| | | 〃 | 사회법연습 Ⅰ | 2 |
| | | 〃 | 서양법제사 | 2 |
| | | 〃 | 형사정책 | 3 |
| 4 | 1 | 필 수 | 상법 Ⅳ | 3 |
| | | 〃 | 영어특강 | 2 |
| | | 선 택 | 국제사법 | 3 |
| | | 〃 | 세 법 | 3 |
| | | 〃 | 행정특강 | 2 |
| | | 〃 | 형사법특강 | 2 |
| | | 〃 | 민사연습 | 1 |
| | | 〃 | 형사연습 Ⅱ | 1 |
| | | 〃 | 민소연습 | 2 |
| | | 〃 | 사회법연습 Ⅱ | 2 |
| | | 〃 | 상법연습 Ⅱ | 2 |
| | 2 | 필 수 | 법철학 | 3 |
| | | 선 택 | 민법연습 Ⅱ | 2 |
| | | 〃 | 신문법연습 | 1 |
| | | 〃 | 민사특강 | 2 |
| | | 〃 | 상법특강 | 2 |
| | | 〃 | 사회보장법 | 3 |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
| 4 | 2 | 〃 | 법률실무Ⅱ | 3 |
| | | 〃 | 한국법제사 | 2 |
| | | 〃 | 재정학 | 2 |
| | | 〃 | 법사회학 | 3 |

〈表 3〉 延世大學校 政法大學 法學科의 敎科課程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
| 1 | 1 | 필 수 | 민법총칙 | 3 |
| | | 〃 | 정치학개론 | 3 |
| | 2 | 필 수 | 법학개론 | 3 |
| 2 | 1 | 필 수 | 헌법Ⅰ | 3 |
| | | 〃 | 형법통론 | 3 |
| | | 〃 | 담보물권법Ⅰ | 3 |
| | | 〃 | 상법총칙 | 3 |
| | | 선 택 | 경제원론Ⅰ | 3 |
| | | 〃 | 원서강독(독) | 3 |
| | | 〃 | 행정학개론 | 3 |
| | 2 | 필 수 | 헌 법Ⅱ | 3 |
| | | 〃 | 형법각론 | 3 |
| | | 〃 | 담보물권법Ⅱ | 3 |
| | | 선 택 | 경제원론Ⅱ | 3 |
| | | 〃 | 법철학 | 3 |
| | | 〃 | 원서강독(영) | 3 |
| 3 | Ⅰ | 필 수 | 국제법Ⅰ | 3 |
| | | 〃 | 유가증권법 | 3 |
| | | 〃 | 형사소송법Ⅰ | 3 |
| | | 〃 | 행정법총론 | 3 |
| | | 〃 | 민사소송법Ⅰ | 3 |
| | | 〃 | 채권법총론 | 3 |
| | | 선 택 | 영어원서강독 | 3 |
| | | 〃 | 서양법제사 | 3 |
| | | 〃 | 노동법 | 3 |
| | | 〃 | 친족상속법 | 3 |
| | 2 | 필 수 | 국제법Ⅱ | 3 |
| | | 〃 | 회사법 | 3 |
| | | 〃 | 형사소송법Ⅱ | 3 |
| | | 〃 | 채권법각론 | 3 |
| | | 〃 | 행정법각론 | 3 |
| | | 〃 | 민사소송법Ⅱ | 3 |
| | | 선 택 | 영어원서강독Ⅱ | 3 |
| | | 〃 | 보험법 | 3 |
| | | 〃 | 비교헌법 | 3 |
| 4 | 1 | 선 택 | 해상법 | 3 |
| | | 〃 | 형사정책 | 3 |
| | | 〃 | 공법연습Ⅰ | 3 |
| | | 〃 | 비교법 | 3 |
| | | 〃 | 영어원강Ⅰ | 3 |
| | | 〃 | 법률사상사 | 3 |
| | | 〃 | 한국법제사 | 3 |
| | | 〃 | 형사법연습 | 3 |
| | 2 | 선 택 | 국제사법 | 3 |
| | | 〃 | 민사연습 | 3 |
| | | 〃 | 공법연습Ⅱ | 3 |
| | | 〃 | 영어원강Ⅱ | 3 |
| | | 〃 | 영미법 | 3 |
| | | 〃 | 경제정책 | 3 |

〈表 4〉 崇田大學校 法經大學 法學科의 敎科課程

| 學年 | 學期 | 敎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
| 2 | 1 | 필 수 | 헌 법 | 3 |
| | | 〃 | 민법총론 | 3 |
| | | 〃 | 국제법 1부 | 3 |
| | | 〃 | 형법총론 | 3 |
| | | 선 택 | 원서강독 | 3 |
| | 2 | 필 수 | 물권법 | 3 |
| | | 〃 | 형법각론 | 3 |
| | | 선 택 | 원서강독 | 3 |
| | | 〃 | 법제사 | 3 |
| | | 〃 | 국제법 2부 | 2 |
| 3 | 1 | 필 수 | 채권법총론 | 3 |
| | | 〃 | 상법총칙 | 3 |
| | | 〃 | 행정법총론 | 3 |
| | | 〃 | 형사소송법 | 3 |
| | | 선 택 | 세법개론 | 3 |
| | | 〃 | 원서강독 | 3 |
| | 2 | 필 수 | 채권법각론 | 3 |
| | | 〃 | 회사법 | 3 |
| | | 〃 | 행정법각론 | 3 |
| | | 〃 | 민사소송법Ⅰ | 3 |
| | | 선 택 | 원서강독 | 3 |
| | | 〃 | 행정학 | 3 |
| | | 〃 | 형사정책 | 3 |

| 學年 | 學期 | 教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學年 | 學期 | 教科區分 | 科 目 名 | 學點 |
|---|---|---|---|---|---|---|---|---|---|
| | | 필 수 | 친족상속법 | 3 | | | 필 수 | 해상보험법 | 3 |
| | | 〃 | 법철학 | 3 | | | 선 택 | 형법연습 | 2 |
| | | 〃 | 어음수표법 | 3 | | | 〃 | 사법연습 | 3 |
| 4 | 1 | 선 택 | 원서강독 | 3 | 4 | 2 | 〃 | 공법연습 | 3 |
| | | 〃 | 민사소송법 | 3 | | | 〃 | 노동법 | 3 |
| | | 〃 | 국제사법 | 3 | | | | | |
| | | 〃 | 경제법 | 3 | | | | | |

(2) 外國大學의 教科課程의 實例

外國 法科大學의 教科教程의 몇몇 實例를 보면 다음 諸表와 같다.

**〈表 5〉 美國 Harvard 法科大學의 教科課程**

1학년(전부 必須科目)

| 과 목 명 | 학 점 |
|---|---|
| 민사소송법 | 6 |
| 계약법 | 6 |
| 형 법 | 4 |
| 불법행위법 | 5 |
| 재산법 | 5 |

2학년 기초과목
(必須는 아니나 先修科目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科目)

| | |
|---|---|
| 회계학 | 2 |
| 헌 법 | 4 |
| 회사법 | 4 |
| 과세론 : 윅셥 | 2 |
| 과세론 | 4 |

2,3학년(전부 選擇科目)

| | |
|---|---|
| 행정법 | 3 |
| 행정법 : 규제과정 | 3 |
| 세미나 : 행정법 | 2 |
| 해상법 | 2 |
| 독점금지법 | 4 |
| 세미나 : 독점금지 | 2 |
| 예술과 법 | 2 |
| 세미나 : 파산법 | 2 |
| 기업계획 | 3 |
| 기업정책 | 3 |
| 교회와 국가 | 2 |
| 민사소송 : 형평법상 구제 | 3 |
| 상 법 | 4 |
| 상거래 | 4 |
| 비교법 : 대륙법제도상의 공법 | 2 |
| 비교법 : 중국의 전통법 | 2 |
| 비교법 : 대륙법제도 | 3 |
| 비교법 : 소련법과 미국법 | 3 |
| 비교법세미나 : 일본법제도 | 1 |
| 비교법 : 중법의 근대화 | 2 |
| 비교 조세정책 | 2 |
| 섭외적 법률문제 A | 3 |
| B 〃 | 3 |
| 〃 : 타주 및 외국판결 | 2 |
| 〃 : 연방법률제도 | 3 |
| 헌법과 소수민족문제 | 3 |
| 헌법 : 적법절차 | 3 |
| 헌법 : 평등권 | 3 |
| 헌법 현대 헌법문제 | 2 |
| 헌법 세미나 : 헌법상의 원리 | 2 |
| 헌법 세미나 : 헌법과 신문 | 2 |
| 헌법 세미나 : 헌법소송 | 2 |
| 헌법 세미나 : 헌법상의 이론 | 2 |
| 헌법 세미나 : 선거 · 정당의 규제 | 2 |
| 헌법이론과 소송윅셥 | 3 |
| 저작권 | 2 |
| 회사재정 | 4 |
| 세미나 회사기획과 카운셀링 | 2 |
| 세미나 : 회사재책문제 | 2 |

| 과 목 명 | 학 점 |
|---|---|
| 범죄와 사회 | 2 |
| 형사소송 | 3 |
| 세미나 : 형사정책 | 2 |
| 채무자 및 채권자의 권리 | 3 |
| 경제규제 | 3 |
| 법률가를 위한경제학고용상의 차별 | 2 |
| 환경법 | 2 |
| 환경법과 공공정책웍셥 | 2 |
| 재산양도A | 3 |
| 〃 B | 3 |
| 증거법A | 3 |
| 〃 B | 3 |
| 가족법A | 2 |
| 〃 B | 3 |
| 연방법원과 연방제도 | 4 |
| 세미나 : 연방정책과 도시 | 2 |
| 세미나 : 도시문제 | 2 |
| 법률실무상 인간관계 | 2 |
| 보험법 | 2 |
| 국제법 : 국제공법 | 4 |
| 국제법 : 초국가적 법률문제 | 4 |
| 국제법세미나 : 무기규제 | 2 |
| 〃 : 외국인투자 | 3 |
| 〃 : 현대적문제 | 2 |
| 〃 : 국제입법법 | 2 |
| 〃 : 국제법과 과학기술 | 2 |
| 〃 : 국제무역과화폐정책 | 2 |
| 〃 : 해양법 | 2 |
| 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태도 | 2 |
| 〃 : 국제법준수의 문제 | 2 |
| 〃 : 국제항공법 | 2 |
| 〃 : 국제거래법 | 3 |
| 〃 : 국제적법률과정 | 3 |
| 〃 : 국제무역법 | 3 |
| 〃 : 전쟁법 | 2 |
| 법률실무 | 9 |
| 세미나 : 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 2 |
| 법집행과 사법행정 | 2 |
| 청소년범죄 | 2 |
| 세미나 : 사실심에서의 사법과정 | 2 |
| 법리학 | 2 |
| 노동중재와 단체협약 | 3 |

| 과 목 명 | 학 점 |
|---|---|
| 노동법A | 3 |
| 〃 B | 3 |
| 공공부문에서의 노사관계 | 2 |
| 토지이용계획 | 3 |
| 세미나 : 법과 기업의 문제 | 2 |
| 아프리카에서의 법과 경제와 사회변동 | 2 |
| 법과 의학 | 2 |
| 법과 공공정책 : 정책분석 | 3 |
| 〃 : 공공경영 | 3 |
| 〃 : 정치적 분석 | 3 |
| 〃 : 계량적 분석 | 3 |
| 법과 사회조사 | 2 |
| 사회보장제도법 | 3 |
| 세미나 : 현대인도에 있어서 법과 국가와 종교 | 2 |
| 세미나 : 중재자로서의 법률가 | 2 |
| 고전적 미국법사상사 | 2 |
| 영국법제사 | 2 |
| 미국법제사A | 3 |
| 〃 B 현대 | 2 |
| 세미나 : 영국법제나 | 2 |
| 세미나 : 제한적조합의 법적문제 | 2 |
| 합병적 절차 | 3 |
| 법률직업A | 2 |
| 〃 B 역할과 이해의 충돌 | 2 |
| 〃 C | 2 |
| 세미나 : 법률직업 | 2 |
| 지방정부법 | 3 |
| 자연자원법 : 수자원법 | 3 |
| 세미나 : 정신이상과 법 | 2 |
| 특허법 | 2 |
| 유해행위의 예견과 예방 | 2 |
| 재산세 웍셥 | 2 |
| 정신분석이론과 법적제가정 | 2 |
| 세미나 : 자연자원에 대한 공권 | 2 |
| 세미나 : 공공지출과정 | 2 |
| 토지개발과 금융 | 2 |
| 산업규제 | 3 |
| 금융기관규제 | 2 |
| 세미나 : 규제절차 | 2 |
| 원상회복 | 2 |

| 과 목 명 | 학 점 |
|---|---|
| 담보규제 | 3 |
| 세미나 : 연방담보법 | 3 |
| 성별에 기한 차별 | 3 |
| 과세론 : 소규모기업 | 3 |
| 세미나 : 주주소득세 | 3 |
| 과세론 : 회사거래 | 3 |
| 세미나 : 연방재산과 증여세 | 2 |
| 연방세와 도시사회문제 | 2 |
| 소득세의 국제적문제 A | 2 |
| 〃 B | 3 |
| 주 및 지방세와 금융 | 2 |
| 세미나 : 조세정책에 관한 현대적 제문제 | 2 |
| 세미나 : 기술과 법과 도시 | 2 |
| 초국가적 환경법 : 일본의 환경법 및 정책과 국제적 측면 | 4 |
| 사실심의 실제 | 2 |
| 신탁 | 3 |
| 국제연합법 | 3 |
| 국제연합법 : 국제행정기관과 법의 발전 | 3 |
| 세미나 : 인권의 국제법적 보장 | 2 |
| 세미나 국제연합법과 세계질서 | 2 |

자료 : Bulletin of Harvard Law School 1976—77

**〈表 6〉 美國 Yale 法科大學의 敎科課程**

1학년 1학기(전부 必須科目)

| 과 목 명 | 학 점 |
|---|---|
| 헌 법 I | 4 |
| 계약법 I | 4 |
| 소송법 I | 3 |
| 불법행위법 I | 4 |

1학년 2학기 이후
(① 형법과 형사행정 I 및 ② 법률실무과목중 1과목이상은 전부 選擇科目)

| | |
|---|---|
| 행정과정 | 3 |
| 미국법제사 I | 3 |
| 〃 II | 3 |
| 법인류학 | 2 |
| 독점금지법 | 3 |
| 파산법 | 2 |
| 생물공학과 법 | 3 |
| 회사법 I | 4 |
| 〃 II | 4 |
| 만성환자와 법 | 3 |
| 보안처분 | 3 |
| 세미나 : 상법 | 2 |
| 비교형사법 | 2 |
| 비교법 | 3 |
| 헌법소송 | 2 |
| 경영활동규제 | 2—6 |
| 저작권과 부당경쟁 | 3 |
| 파산회사의 재설립 | 2 |
| 형사절차 개혁워셥 I | 2 |
| 〃 II | 3 |
| 〃 III | 3 |
| 〃 IV | 3 |
| 형법특수문제 | 3 |
| 형사소송 I | 3 |
| 개발계획과 사회변동 | 2 |
| 배분적 정의와 헌법 | 3 |
| 법률가를 위한 경제학 | 3 |
| 영국법제사 | 2 |
| 재산권양도 | 2 |
| 증거법 | 3 |
| 가족 법 : 아동법 | 3 |
| 연방관할권 | 3 |
| 인디언법 | 2 |
| 법리학 | 2—3 |
| 노동법 | 3 |
| 토지계획 | 2 |
| 법과 의학 : 연구·치료의 규제 | 2—3 |
| 형사절차 개혁에서의 변호사 역할 | 3 |
| 법회계학 | 2 |
| 법률상의 논리적 및 언어적 측면 | 2—3 |
| 비영리단체 | 3 |
| 특허와 독점금지 | 2—3 |

| 과 목 명 | 학 점 |
|---|---|
| 법철학과 정치 | 2 |
| 예방법학 | 2 |
| 정신분석과 법 | 2—3 |
| 세계공동체의 공공질서 | 4 |
|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규제 | 2 |
| 법률가를 위한 조사방법 | 1 |
| 인류학 | 2 |
| 담보법 | 3 |
| 담보규제와 금융 | 3—4 |
| 사회정의 | 3 |
| 법사회학개론 | 3 |
| 과세론 : 양도세 · 증여세 〃 | 3 |
| 〃 : 소득세 | 4 |
| 과세론세미나 | 2 |
| 철학(인간행위론) | 2 |
| 비극적 선택 : 인공신장 · 인구조절등의 문제 | 2<br>4 |
| 사실심 실제 | 4 |
| 해상법 | 3 |
| 아프리카의 법발전 | 3 |
| 독점금지법 Ⅱ | 2 |
| 법률구조 | 3 |
| 영국법리학의 고전 | 2 |
| 공공부문에서의 단체협약 | 2 |
| 상거래 | 3 |
| 섭외법률관계 | 3 |
| 헌법 Ⅱ | 3 |
| 헌법과 복지국가 | 3 |
| 소비자 보호 | 3 |
| 회사의 사회적 책임 | 3 |
| 형법과 형사행정 Ⅰ | 3 |
| 범죄학 | 2 |
| 초기미국법제사 | 2 |

| 과 목 명 | 학 점 |
|---|---|
| 환경법과 정책 | 3 |
| 재산권 이전 Ⅰ | 3 |
| 증거법 | 3 |
| 가족법 | 3 |
| 금융제도 | 2 |
|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 2 |
| 형평법상의 금지명령 | 3 |
| 국제법 Ⅰ | 4 |
| 〃 Ⅱ : 전쟁법 | 2 |
| 국제 거래법 | 2 |
| 법과 의학 Ⅱ | 3 |
| 법과 생명과학 | 2 |
| 법제사 : 미국법률제도의 발달 | 3 |
| 법률직업 | 2—3 |
| 입법과정 | 2 |
| 경제규제의 한계 | 2 |
| 군 법 | 2 |
| 정치적 · 시민적 권리 | 3 |
| 정치철학과 헌법 | 3 |
| 수감자의 권리와 법률구조 | 3 |
| 소송법 Ⅱ | 3 |
| 재산법 Ⅰ | 4 |
| 〃 Ⅱ | 2 |
| 공립학교 | 3 |
| 과학적 · 실험적 증거 | 2 |
| 담보규제 특수문제 | 2 |
| 사회주의 법률제도 | 2—3 |
| 과세론 : 회사와 주주 | 3 |
| 불법행위법 Ⅱ | 3 |
| 세미나 : 불법행위 · 계약 | 2 |

자료 : Bulletion of Yale Law School, 1975—76.

〈表 7〉 1970년 2월 西獨 法科大學會議

敎育改革委員會가 提出한 敎科課程案

| 학기 | 교과구분 | 과 목 명 | 주당 시간수 |
|---|---|---|---|
| 1 | 필 수 | 초급민법 | 8 |
| | | 형법총론 | 5 |
| | | 국법학 Ⅰ | 4—5 |
| 2 | 필 수 | 채권법 | 4 |
| | | 형법각론 | 3 |
| | | 국법학 Ⅱ | 3—4 |
| | | 法源史入門 | 2 |
| | | 경제학입문 Ⅰ | 2 |

| 학기 | 교과구분 | 과 목 명 | 주당 시간수 |
|---|---|---|---|
| 3 | 필 수 | 물권법 | 3 |
| | | 형사소송법 | 3 |
| | | 행정법 Ⅰ | 3—4 |
| | | 노동법개론 | 3 |
| | | 법철학(또는 법사회학·법이론)입문 | 2 |
| | | 경제학입문 Ⅱ | 2 |
| 4 | 필 수 | 민사소송법 | 4 |
| | | 친족상속법 | 4 |
| | | 형법실습 | 2 |
| | | 기업법개론 | 4 |
| | | 私法思想史 | 3—4 |
| 5 | 필 수 | 민사법전문과정 Ⅰ | 2 |
| | | 민사법실습 | 2 |
| | | 공법실습 | 2 |
| | | 노동법복습및전문과정 | 2—3 |
| | | 법제사(법철학·법사회학·법이론)전문과정 | 2 |
| | 선 택 | 민사소송법 | 4 |
| | | 형사학 | 1—2 |
| | | 형법사 | 1—2 |
| | | 근대헌정사 | 2—3 |
| | | 행정법각론 | 3—4 |
| | | 경제법 | 4 |
| | | 노동법전문과정 | 4 |
| | | 국제사법 | 3 |
| | | 부기 및 회계 Ⅰ | 2 |
| 6 | 필 수 | 민사법전문과정 Ⅱ | 2 |
| | | 공법복습과정 Ⅰ | 2 |
| | | 기업법복습및전문과정 | 3—4 |
| 6 | 선 택 | 소년형법 | 1—2 |
| | | 刑量定論 | 1—2 |
| | | 일반국가론 | 4 |
| | | 행정학 | 2 |
| | | 유가증권법 | 2 |
| | | 競業 및 商標法 | 2 |
| | | 회사법전문과정 | 4 |
| | | | 3 |
| | | 부기 및 회계 Ⅱ | 2 |
| | | 민사법세미나 | |
| | | 형법 세미나 | |
| | | 공법 세미나 | |
| | | 상법(경제법·노동법·사회법·세법) 세미나 | |
| | | 비교법·국제사법 세미나 | |
| | | 법제사(법철학·법사회학·법이론) 세미나 | |
| | | 경제학 세미나 | |
| 7 | 필 수 | 민사법 복습과정 | 4 |
| | | 형법 복습과정 | 2 |
| | | 공법 복습과정 Ⅱ | 2 |
| 7 | 선 택 | 行刑學 | 1—2 |
| | | 국세법 | 3 |
| | | 상행위법 특강 | 2 |
| | | 세법개론 | 2 |
| | | 외국법입문 | 2 |
| | | 세미나(6학기와 동일한 각분야) | |

자료 : 金亨培, 「法科大學의 敎科課程」, 韓國의 法學敎育, pp. 117—8로부터 再構成.

〈表 8〉 벨기에 Louvain 大學의 敎科課程

| 학년 | 교과구분 | 과 목 명 | 주당 시간수 | |
|---|---|---|---|---|
| | | | 1 학기 | 2 학기 |
| 1 | 필 수 | 형이상학 | 2 | 1 |
| | | 라틴저서해설 | 2 | 2 |
| | | 불문학사 | 4 | |
| | | 근대문학 | 1 | 1 |
| | | 윤리철학 | | 3 |
| | | 심리학 | 2 | 2 |
| | | 역사비판론 | 2 | |
| | | 현대사 | 1 | 1 |
| | | 고대사회·제도 | 4 | |
| | | 중세사회·제도 | | 2 |
| | | 근대사회·제도 | 1 | 1 |
| | | 연습 | 2 | |

| 학년 | 교과구분 | 과 목 명 | 주당 시간수 | |
|---|---|---|---|---|
| | | | 1 학기 | 2 학기 |
| 2 | 필 수 | 불문학사 | 2 | 1 |
| | | 논리 | 3 | |
| | | 자연법 | 2 | 2 |
| | | 국사 | 3 | |
| | | 법학인문 | | 2 |
| | | 민법사 | | 1 |
| | | 민법연습 | 1 | 2 |
| | | 로마법 | 3 | 3 |
| 3 | 필 수 | 민법(신분·물권) | 6 | 3 |
| | | 민법연습 | 3 | 1.5 |
| | | 민법(채권) | 3 | 3 |
| | | 헌법 | 3 | 1.5 |
| | | 형법 | 3 | 1.5 |
| | | 경제학 | 1.5 | 3 |
| | 선 택 | 로마법학설 | 1.5 | 1.5 |
| | | 법제사 | 1.5 | 1.5 |
| | | 재정학 | 1.5 | 1.5 |
| 4 | 필 수 | 민법(계약) | 1.5 | |
| | | 민법(담보물권) | 1.5 | |
| | | 민법(부부재산세 증여유증) | 3.5 | 3.5 |
| | | 민법(상속) | 1.5 | 1.5 |
| | | 행정법 | 1.5 | 3.5 |
| | | 형사소송법 | 1.5 | 1.5 |
| | | 형사소송법연습 | | 1 |
| | | 교회와 국가 | 2 | 2 |
| | | 국제법 | 1.5 | 1.5 |
| | | 산업입법 | 1.5 | 1.5 |
| | 선 택 | 비교형법 | 1.5 | 1.5 |
| | | 비교법입문 | 1.5 | 1.5 |
| | | 법의학 | 1.5 | 1.5 |
| | | 보험의학 | 1 | 2 |
| | | 노동재해보상방법론 | 1 | |
| 5 | 필 수 | 종교학 | 1 | |
| | | 법원조직법, 재판 관할및민사소송법 | 3 | 1 5 |
| | | 〃 Ⅱ | | 4 |
| | | 상법 | 3 | 3 |
| | | 상법연습 | 1 | |
| | | 세법 | 3 | 3 |
| | | 세법연습 | | 1 |
| | | 국제사법 | 1.5 | 1.5 |
| | | 사회입법 | 1.5 | 1.5 |
| | | 직업윤리 | | 1.5 |
| | 선 택 | 비교민법 | | 1.5 |
| | | 해상법 | 1.5 | 1.5 |
| | | 보험론 | 1.5 | 1.5 |
| | | 비교상법 | 1.5 | 1.5 |
| | | 법철학 | 1.5 | 1.5 |

자료 : 李太載, 「司法制度와 法科大學에 관한 當面問題」, 韓國의 法學敎育, pp. 76—7 로부터 再構成.

(3) 敎科課程 改編의 基本方向

法學敎育에 있어서 敎育內容의 核心을 이루는 것은 敎科課程의 編成이다. 敎科課程의 編成은 敎科目的·敎育年限·學科와 긴밀히 關聯된 문제이나 現行 4年制下의 單一 法學科를 前提할 때 고려되어야 할 事項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法學敎育 目的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法學敎育은 기본적으로 職業敎育의 性格을 갖는 만큼 法科大學 卒業生의 進出分野의 需要에 따른 敎育內容을 提供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職業敎育으로서의 法學敎育은 단순한 技術敎育과 달리 敎養敎育의 土臺 위에 서지 않으면 안되는 데, 4年制에 있어서 敎養課程과 專攻課程을 각각 몇년씩으로 構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法學敎育이 목표로하는 法律家像은 단순히 技術的인 法適用者가 아니라 法을 밖에서 批判的으로 볼 수 있는 法定立者에 있으므로, 法學敎育에 있어서 法의 社會的·政治的·哲學的 背景의 理解를 위한 補助科目의 敎育이 필요하다.

넷째, 法學의 學問으로서의 性格이 단순한 理論科學이 아닌 實踐科學이며 또한 法學敎育이 職業敎育이기 때문에 法의 實際를 다룰 수 있는 應用力을 길러주기 위해 演習 科目 또는 세미나의 設置가 必要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時代와 社會의 변천에 따른 法學의 發達·專門化와 社會의 새로운 需要에 응하여 새로운 科目의 設置가 필요하다.

여섯째, 細部的인 문제로써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의 區分必要性 또는 比率의 문제가 있다.

일곱째, 科目數의 增大와 관련하여 卒業 所要學點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4) 卒業生의 社會進出實態의 考慮

法學專攻의 卒業生이라면 法曹界로 進出하는 것이 正常的일 것이다. 그러나 現行 司法試驗制度의 不合理性으로 말미암아 現實的으로는 극히 一部分만이 法曹界로 進出할 뿐, 대부분이 行政府 또는 企業體로 進出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法大 卒業生의 경우 法曹界 進出은 겨우 13.9%에 지나지않으며, 17.5%가 行政府에, 33%가 企業體에 進出하고 있다. 또 延世大 法學科의 卒業生의 경우는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5%가 法曹界에, 11.5%가 行政府에, 42.1%가 企業體에 進出하고 있다. 全國의 法學科 卒業生 전체로 본다면 法曹界 進出率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法科大學의 敎科 課程 編成에 있어서도 行政府 또는 企業體 進出者의 需要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行政府 進出者에 대하여는 우선 行政考試 科目이 고려되어야

〈表 9〉 서울法大卒業生의 社會進出實態

| 진출분야 / 졸업년도 | 法曹界 | 行政府 | 企業體 | 기 타 | 未 詳 | 計 |
|---|---|---|---|---|---|---|
| 1958 | 21 | 65 | 109 | 50 | 62 | 305 |
| 1961 | 51 | 68 | 89 | 31 | 87 | 326 |
| 1964 | 65 | 40 | 129 | 43 | 78 | 355 |
| 計 | 137(14) | 173(17) | 325(33) | 124(13) | 227(23) | 986(100%) |

자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法學」第16卷2號, p. 149.

〈表 10〉 延世大法科卒業生의 社會進出實態

| 진출분야 / 졸업년도 | 法曹界 | 行政府 | 企業體 | 기 타 | 未 詳 | 計 |
|---|---|---|---|---|---|---|
| 1954—1970 | 30(3.75) | 92(11.5) | 337(42.1) | 180(22.5) | 160餘(20) | 약 800(100%) |

자료 : 李根植, 法大生의 意識과 活動, 韓國法學敎授會編, 韓國의 法學敎育, p. 183으로부터 再構成.

할 것이고 企業體 進出者에 대해서는 經濟 經營關係의 法律科目의 敎育이 필요할 것이다.

1977년 1월 11일의 改正令에 의한 現行 行政 高等考試 科目을 보면 1차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民法總則·財政學·英語·國史, 2차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行政學·行政法·經濟學·憲法,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國際法·商法·勞動法·政治學중의 1과목 및 會計學·統計學·經營學·調査 方法論중의 1과목으로 되어있다. 이들 중, 1차시험의 과목중에서 民法總則은 基礎 法科目이고 英語, 國史는 敎養課程에 포함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2차 시험 과목 6個科目중 3個 科目은 法律專攻 科目이 아니다. 이들 非法律 專攻科目은 試驗科目의 여부에 관계없이도 法律專攻의 補助科目으로서 重要性을 갖는다. 現行 敎科課程에서의 이들 科目의 反映 여부를 보면, 서울大學校의 경우 1976년 부터의 新敎科課程에서 이들 科目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데 다른 大學의 경우는 部分的으로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 科目을 반영하는 方法으로는 서울대학교의 경우처럼 法科大學의 正規科目으로서 設置하는 방법과, 綜合大學으로서의 性格을 이용하여 他大學의 科目의 受講 및 學點取得을 인정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한편 企業體 進出者를 위한 科目으로는 商法·民法등 基本科目외에도 최소한 稅法·勞動法·經濟法·破產法·會社整理法·工業所有權法·金融法·證券去來法·國際去來法 등의 關係 法律科目, 그리고 會計學·財務管理 등의 經營學 科目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敎養課程과 專攻課程의 構成比

4年制를 前提하는 경우 敎養課程과 專攻課程을 각각 몇년씩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종래에 일반적으로 敎養課程 1年, 專攻課程 3年으로 실시되어 왔는 데, 최근 文敎當局에서 敎養敎育을 一律的으로 1.5年 내지 2年으로 늘리려는 政策的 試圖와 더불어 그 妥當性 여부가 論難되었다.

2—2年案은 法學敎育의 基本目的에 있어서 敎養法學의 敎育이라는 側面을 강조하고 따라서 法律專攻보다 그 前提로서의 敎養敎育이 중요하고 이에는 최소한 2年이 필요하다는 것을 論據로 삼는다. 이 案이 敎養敎育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이에는 최소한 2年이 필요다고 하는 점은 그 자체로서 妥當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相對的인 문제이며 法學敎育의 目的上 職業敎育의 性格이 基本이라고 할 것이므로 專攻敎育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年으로는 專攻敎育의 目的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으며 더우기 敎科目의 擴充등의 敎育內容의 改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1.5—2.5年案은 法學專攻에 최소한 3年이 필요하다고 敎養敎育에도 2年이 요구되지만 敎育年限을 延長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각각 0.5年씩 減縮할 수 밖에 없다는 일종의 折衷策으로 주장되어 서울大學校의 경우 이미 1975年度에 一次 실시한 方案이다. 그러나 이 案은 學事管理의 不便도 있으려니와 敎養敎育도 專攻敎育도 모두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서울大學校에서도 종래의 1—3年案으로 환원하기로 한

바 있다.

1—3年案은 法學 專攻敎育에 최소한 3年이 필요하며 法學敎育이 기본적으로 職業敎育인 以上 4年制를 전제하는 경우 敎養敎育의 未洽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案은 종래 실시되어 오던 것이며 또한 一般的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第一 辯護士會가 1969년 6월 4일에 발표한 司法制度 改善 審議會에 대한 建議文에서도 1—3年案에 주장되었고, 서울法大 敎授會의 1974년 7월 13일자 『法科大學의 學制에 관한 建議書』에서도 5年制가 실시 안될 경우의 代案으로 1—3制를 建議한 바 있다.[10]

그러므로 4年制下에서는 敎養課程 1年, 專攻課程 3年으로 構成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할 수 있다.

(6) 補助科目의 設置

法學 敎育에 있어서 法律 專攻科目뿐만 아니라 隣近 人文社會科學을 중심한 補助科目의 設置가 필요한 것은 위의 法學敎育 目的에 관한 부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法學敎育이 狹少한 技術敎育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고려에서 비롯한다. 學生들은 社會現實에 대한 生活經驗이 不充分하므로 이를 理論的, 體系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經濟秩序의 基本構造라든가 社會를 움직이는 力關係 및 國家의 活動등에 관한 敎育을 法學敎育과 併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法律家가 法的判斷을 내리기 앞서 事實을 確證하는데에 있어 다른 專門 分野의 科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法學自體에서도 事實科學의 硏究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 法科大學의 敎科課程에서도 補助科目들이 編入되고 있는 데 그 理由는 上記한 理由외에도 現實的으로 行政府나 企業體 進出者의 試驗準備를 위한 考慮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補助科目을 敎育하는 경우에도 試驗準備만을 위한 것은 敎育內容에서 質的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本來의 敎育態圖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補助科目을 編入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느 科目을 넣느냐 하는 점에서는 統一되어 있지 않다. 外國 大學의 경우, 美國에서는 法科大學이 大學院 課程인 만큼 〈表 5〉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律家를 위한 經濟學』『會計學』등 몇몇 例를 제의하면 따로이 補助 科目의 設置가 없고 隣近 人文 社會科學과 관련된 法律 問題를 專門的으로 廣範하게 敎育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西獨, 벨기에의 경우는 〈表 7〉 〈表 8〉에서 보는 것처럼 經濟學, 財政學 정도가 編入되고 있다. 우리나라 大學에서는 일반적으로 政治學槪論, 經濟原論등이 敎養課程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외에, 예컨대 서울大學校의 경우처럼 外交史, 政治思想史, 貨幣金融論, 經濟發展論, 景氣變動論등 비교적 細分化된 敎科目이 설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따로이 法科大學의 敎科目으로 이러한 細分된 敎科目이 편입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보통이다.

(10)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法學, 第16卷第 2 號, p. 143.

그 妥當性 여부에 관해서는 論難이 있을 수 있으나 學生들의 社會進出 實情이라는 現實的 考慮 외에도 上記한 補助科目 設置의 必要性에 비추어 細分된 補助科目을 選擇科目으로 編入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細部的인 문제로서 補助科目을 敎養課程에서 敎育하는가 아니면 法學專攻 敎育과 併行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1年의 敎養課程에서 충분한 補助 科目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不可하다는 이유에도, 本格的인 法學敎育前에 獨立된 敎科課程에서 補助科目을 敎育하는 것은 法學과의 關聯을 맺으면서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補助科目을 敎育한다는 의미에서의 目的이 半減되고 실제로 敎養課程이 끝난 후의 法學敎育은 다시 現實科學的(wirklichkeits wissen chaftlich) 事實이나 知識과 고립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11] 法學敎育과 併行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7) 演習科目의 擴充

우리나라 大學의 現行 敎科課程의 編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問題點은 演習科目의 不足이다. 演習科目을 設置·擴充해야 할 필요성은 法學敎育이 理論과 實際의 統一的인 調和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本來的인 理由外에도, 現實的으로 現行 司法試驗 制度의 큰 盲點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論述型의 出題方式을 止揚하도록 誘導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理解力과 應用力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모한 暗記力만을 강요하는 現行 出題形式은 「케이스」形式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先行하여 判例硏究와 演習問題를 위주로 하는 演習科目의 實質을 强化하고 그 科目數를 擴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出題方式의 改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나 설사 종래의 方式이 계속 고집되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체로 演習의 方式에는 「세미나」와 「위붕」(Uebung)이 있는데, 「세미나」의 경우 보다 적은 人員數를 전제한다는 제약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위붕」으로서의 演習科目이 설치되고 있다.

구체적인 問題點으로서는 ① 演習科目數의 增大 必要性 ② 實質的 內容의 內實化 ③ 必須 또는 選擇으로 할 것인가 ④ 演習科目의 學年別·學期別 位置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먼저 科目數를 보면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內大學의 경우 「세미나」는 전혀 없으나 演習은 日本에 비해 비교적 많이 설치하고 있고, 서울大·慶北大등 國立大에서 他大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演習을 두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多數의 「세미나」를 두고 있는데, 「세미나」이든 아니든 그 講義 形式에서는 「케이스」와 問題를 중심한 質問과 討論의 形式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같으나, 「세미나」의 경우 10명 內外의 少數로 人員을 제한하고 內容이 高度의 專門的인 分野인 것이 보통이며 試驗 대신 「페이퍼」라는 소규모의 論文을 제출하는 점

(11) 金亨培, 前揭, pp. 111—2 참조.

이 다르다.

西獨의 경우는 高學年에서 비교적 많은 「세미나」를 설치하고 있고, 5年制의 벨기에 「루뱅」大의 경우 各 學年에 적지 않은 演習을 두고 있다.

〈表 11〉 演習 및 「세미나」科目의 數

| 대학 | 國內 | | | | | | 日本 | | | | 美國 | | | | | | 벨기에 |
|---|---|---|---|---|---|---|---|---|---|---|---|---|---|---|---|---|---|
| | 서울大 | 慶北大 | 忠南大 | 高大 | 延大 | 崇田大 | 中央大 | 日本大 | 大阪大 | 同志社大 | 하바드大 | 예일大 | 콜럼비아大 | 캘리포니아 (버클리)大 | 텍 사 스 (오스틴)大 | 西獨 | 루뱅大 |
| 연 습 | 8 | 13 | 4 | 4 | 3 | 3 | 2 | | 2 | 3 | | | | | | 3 | 12.5 |
| 「세미나」 | | | | | | | | 1 | | | 40 | 51 | 52 | 17 | 29 | 14 | |

* 西獨의 경우는 1970년 2월 西獨 法科大學會 議敎育改革委員會가 제출한 敎科課程案에 의함.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大學의 경우 演習科目의 數的 增加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演習科目의 內實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종래 名目上 演習에 그칠 뿐 內容에 있어서는 一般科目의 延長 또는 補充에 그친 경우가 많았음에 비추어 名實共한 演習이 되어야 할 것이다. 演習科目의 實質을 기하기 위하여는 여러 先決要件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敎育方法의 改善과 관련하여 後述한다.

演習科目을 必須科目으로 할 것인가 選擇科目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學年別 位置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意見對立이 있을 수 있으며[12] 實際에 있어서도 統一되어 있지 않다. 國內大學의 경우, 서울大學校에 있어서는 〈表 1〉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演習科目이 4學年의 選擇 科目으로 되어있다. 이 점은 〈表 3〉 〈表 4〉에서 보는 것처럼 延世大, 崇田大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慶北大의 경우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많은 演習科目을 各 學年에 고루 分布시키면서 2,3學年에서는 必須로, 4學年에서는 選擇으로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西獨의 1970년의 改編案의 경우,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礎法律科目의 演習科目을 4,5 學期의 必須로 하면서 6,7學期에서 많은 「세미나」를 選擇으로 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세미나」를 2,3學年에 두면서 모두 選擇으로 하고 있는 데, 美國에서는 모든 科目이 말하자면 演習의 性格을 띠고 1學年 또는 1學年 첫학기의 科目을 제외하고는 모두 選擇으로 하고 있으므로 敎科課程編成의 基本性格이 다르다. 생각컨대 演習科目을 일률적으로 4學年의 選擇 科目으로 할 것이 아니라, 民法·刑法·憲法등 基本 法律 科目의 演習을 2,3學年의 必須로 하면서 高級 또는 細分된 기타 科目의 演習을 4學年의 必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8) 새로운 敎科目의 設置

時代와 社會의 변천에 따라 旣存 法律이 改正되거나 새로운 法律이 制定되기도 하며 새로운 法律問題들이 發生하게 된다. 예컨대 環境法의 문제를 대표적인 경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2) 예컨대 金亨培교수는 選擇으로 하여도 무방하리라 한다. 上揭, p. 108.

또한 旣存 法律이라도 現實的인 重要性이 증대하는 경우도 있다. 稅法, 工業 所有權法 등이 그 例이다. 한편 國際關係, 특히 國際 經濟關係가 긴밀해감에 따라 國際去來法, 比較法등의 重要性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現代社會의 새로운 需要에 따라 法學도 發達·專門化해감으로 새로운 敎科目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漸增하고 있다. 이러한 面에서 가장 發達되어 있는것은 美國이다. 美國의 경우, 특히 近來 法學의 關心 分野가 극도로 확대되어 心理學·精神分析學·社會學·人類學·政治經濟學등의 成果를 法律問題에 적용시키는 諸 科目이 設置되고, 또한 法學을 단순한 規範學의 협소한 범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社會科學, 특히 行態科學(Behaviorial science)의 하나로 파악하여 法律問題의 解決에 行態科學의 方法論을 導入하는 경향이 强하며 또 그러한 科目들이 설치되고 있다. 一例로 〈表12〉에서 보는 것처럼 하바드 大學의 敎科課程의 分野別 敎科目數와 그 內容의 몇 例를 보면 얼마나 法學의 敎科目이 細分·專門化되고 實際의 社會 問題와 밀접히 연관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表 12〉 하바드 法科大學 敎科 課程의 分野別 科目數와 分野別 科目內容의 몇몇 例**

| 분 야 | 헌법 | 행 정 규제법 | 환경·도시법 | 세법 | 법과공공정책 | 상법 | 회사·기업관계법 | 노동법 | 법률직업론 | 섭외법 | 법과의 학 |
|---|---|---|---|---|---|---|---|---|---|---|---|
| 과목수 | 13 | 12 | 8 | 14 | 4 | 4 | 12 | 5 | 4 | 4 | 3 |

| | 실 무 연 습 | 소송·증거법 | 법철학 | 법제사 | 국제법 | 국 제 거래법 | 비교법 | 법과사회발전 | 민법 | 형법 | 기타 |
|---|---|---|---|---|---|---|---|---|---|---|---|
| | 4 | 6 | 2 | 5 | 13 | 7 | 6 | 2 | 5 | 2 | 16 |

(헌법분야)

헌 법
헌법과 소수민족 문제
헌법 : 평등권
헌법 이론과 소송 웍샵
교회와 국가
성별에 기한 차별
고용상의 차별
헌법 : 현대 헌법 문제

세미나 : 헌법 소송
〃 : 헌법상의 원리
〃 : 헌법과 신문
〃 : 헌법상의 이론
〃 : 선거·정당의 규제

(환경법·도시 계획 분야)

환경법
환경법 : 고급
토지 이용 계획
부동산 계획 : 토지 개발과 금융
자연 자원의 경영 : 수자원법
환경업과 공공 정책 웍샵
세미나 : 자연 자원에 대한 공권
〃 : 도시 문제의 금융적·법적 분석

(국제 거래법 분야)

국제 거래법
국제 무역법
소득세의 국제적 문제A
B
초국가적 환경업
세미나 : 외국인 투자
〃 : 국제무역과 화폐정책

우리나라 法科大學도 종래 30—40年前의 "日本의 法科大學에서 하던 敎科目이 오늘날 까지도 그대로 고스란히 박물관 모양 보존"[13]되어 있던 상태를 벗어나려는 試圖가 없지 않아 部分的으로 실현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表 1〉 〈表 2〉 〈表 4〉에서 보는 것처럼 稅法 科目이 서울大·慶北大·崇田大등 여러 大學의 敎科課程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서울大의 新 敎科課程의 경우에는 그밖에도 法心理學, 國際去來法, 社會保障法, 地域開發論, 調査方法論등이 포함되어 있어 多樣化해 가는 경향을 엿보게 한다. 또한 慶北大의 경우에는 法社會學, 신문법 연습, 법률 실무등의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總 專攻科目數(必須 및 選擇포함)를 比較한 〈表 13〉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科目의 設置 必要性은 아직도 크다고 하겠다. 1974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敎育制度硏究委員會의 『法大學制에 관한 硏究報告書』에 의하면 法社會學, 環境法, 工業 所有權法, 比較法등의 新設을 주장하고 있으며[14], 同大學이 1975년 10월에 행한 意見 調査에서 提示된 것으로는 이밖에 航空法, 立法學, 貿易去來法, 國際機構論, 法心理學, 法律會計, 法學硏究方法論, 法學實務修習, 法律用語등이 있다. 이밖에도 旣存 基本科目의 細分專門化가 필요할 것이며(특히 憲法, 國際法, 行政法분야), 그때 그때 時事性는 敎科目이 융통성있게 新設되어야 할 것이다.

**〈表 13〉 總專攻科目數(必須 및 選擇 포함)의 比較**

| 대학 | 國內 | | | | | | 日本 | | | | 美國 | | | | | 西獨 | 벨기에 |
|---|---|---|---|---|---|---|---|---|---|---|---|---|---|---|---|---|---|
| | 서울大 | 慶北大 | 忠南大 | 高大 | 延大 | 崇田大 | 東京大 | 日本人 | 中央大 | 同志社大 | 하바드大 | 예일大 | 콜롬비아大 | 캘리포니아(버클리)大 | 텍사스(오스틴) | 1970년案 | 루뱅大 |
| 과목수 | 51 | 63 | 38 | 39 | 49 | 35 | 63 | 45 | 59 | 61 | 151 | 108 | 142 | 103 | 104 | 67 | 44 |

※ 서울大의 경우는 新 敎科課程에 의한 것으로 政治·經濟學 분야의 一般 擇選 科目을 제외한 것임.

그러나 敎科目을 增設하는 데에는 現實的으로 극복해야할 여러 難題들이 있다.

첫째, 時間數의 絶對的 增加가 필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科目의 設置뿐 아니라 前述한 演習 科目의 增設, 補助 科目의 設置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時間數를 增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敎育年限을 延長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年限延長이 어려운 것을 前提한다면 法科大學의 경우 卒業 所要學點을 增加시킨다든지 또는 學點當 時間數를 경우에 따라서는 時間 以上씩 하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隣近 人文社會科學系의 補助科目은 이를 選擇으로 하면서 該當 他大學 學科의 科目을 受講토록 하는 方法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科目의 增設에 先行해야 할 것으로 우리나라 法學自體의 體質改善을 더욱 추진하여야 한다. 實定法 條文中心의 抽象的 法解釋이라는 재래의 좁은 法學觀을 벗어나 判例敎育을 導入하고 外國의 法制度·學說·判例를 敎育하며 外國의 例처럼 隣接科學의 成果를 受容·發展

(13) 咸秉春, 「韓國의 法學敎育과 司法試驗制度」, 司法行政, 通卷114號, p. 37.
(14) 同報告書(1974. 7), pp. 93—115 참조.
(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法學, 第16卷 2號, p. 157.

시키지 않는 限, 敎科目 改編은 實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可能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 點은 法學 敎授들이 共同으로 또는 各自가 學問的 次元에서 解決할 일이다.

셋째, 時間數의 增加와 아울러 敎授를 確保하지 않으면 안된다. 分野에 따라서는 供給이 不足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供給過剩의 分野도 많으므로 後者의 경우에는 도리어 大學側의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大學 經營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私立大의 경우는 現實的으로 큰 障碍要素이다.

(9) 必須·選擇의 構成比

選擇·必須의 區別을 두는 것은 國內外 大學을 불문하고 공통된 현상이다. 그 比率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美國大學의 경우에는 최초의 1學期 또는 1, 2學期만 4~6個 科目의 必須科目을 課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選擇으로 하고 있음이 特徵이다. 이것은 學生들의 個別的인 必要와 關心에 따라 넓은 選擇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表 14〉에서 보는 것처럼 國內大學의 경우는 美國大學에 비하여는 물론. 日本 및 西獨의 경우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必須科目의 比率이 높다. 또한 意見에 따라서는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의 比率이 대체로 2 : 1정도가 좋다는 견해도 있다.[16]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必須科目은 憲法·民法·刑法·訴訟法등 최소한의 基本 科目에 국한하고 3, 4學年의 科目은 可及的 모두 選擇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學生의 多樣한 社會進出實態에 비추어 보아도 妥當한 것 같다.

〈表 14〉 專攻科目에 있어 必須·選擇科目數의 比較

| 대학 / 과목 | 國內 | | | | | | 日本 | | | | 西獨 |
|---|---|---|---|---|---|---|---|---|---|---|---|
| | 서울大 | 慶北大 | 忠南大 | 高 大 | 延 大 | 崇田大 | 東京大 | 日本大 | 中央大 | 同志社大 | 1970년案 |
| 필 수 | 22 | 27 | 15 | 20 | 22 | 18 | 13 | 15 | 15 | 14 | 30 |
| 선 택 | 29 | 36 | 23 | 19 | 27 | 17 | 50 | 30 | 44 | 47 | 37 |

※ 西獨의 경우는 「세미나」를 선택에 포함시킨 것임.

(10) 卒業 所要學點의 增大

이미 指摘한 것처럼 法學의 專門化에 따른 科目의 增設, 演習科目의 擴充, 補助科目의 設置등은 時間數의 增加를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하여는 敎育年限을 延長않는 한 卒業 所要學點數를 늘이는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學科目의 增設은 그 意味가 半減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160學點은 180學點 정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文敎部의 實驗大學 運營方針에 따르면 오히려 卒業 所要學點을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 縮小시키고 있다. 실제로 예컨대 崇田大學校의 경우는 法學科의 경우에도 140學點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上述한 改善의 方向과는 逆行되는 것이다. 慶北大學校에서는 實驗大

學이면서도 法科大學만은 달리 취급하여 160 學點을 課하고 있으며, 서울大 法科大學에서도 종전처럼 160學點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17]

## 2. 敎育方法의 改善

(1) 問 題 點

종래 우리 法學敎育의 가장 큰 盲點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은 制度的 問題 못지 않게 敎育의 實質的 內容을 敎授하는 方法에 관한 것이었다. 종래의 法學敎育 方法은 한마디로 注入式 講義方式(lecture-method)에 시종하였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敎授 혼자서 講演하는 方式이다. 이와 같은 講義方式은 法의 抽象的 基本原理를 理解하고 法學의 基礎槪念을 습득하는 데 그칠 뿐이며 法의 創造的 應用力을 기를 수 없는 치명적 결점을 지닌다. 그리하여 學生들은 抽象的 原理의 暗記에만 몰두하게 되어 靜態的인 "legal dictionary"로 될 뿐 動態的인 "legal mind"는 갖출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前近代的 敎授方法이 지속되어 왔던 것은 첫째, 旣成敎授들이 在來의 習慣을 버리지 못한 점에도 찾을 수 있지만, 둘째로 이를 改善하려는 近來의 試圖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 온 主要因은 暗記 爲主의 論述型 答案을 요구하는 司法試驗의 出類形式이다. 이의 弊端을 가리켜 murphy 敎授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사법 시험에 대비하여 암기식 학습법으로 3, 4년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실질적 학문을 등한히 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관습을 혁신하는 것이 법학교육의 기본 문제이다. 이러한 악습은 교수의 창의적 강의를 저해하며 사법시험과 관계없는 교재를 사용하는 교수는 학생들의 '배척을 받는다.' (boycotted)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즉 같은 과목을 2명의 교수가 담당할 때 일방이 창의적 교수법을 쓰고 다른 일방은 사법시험 준비의 인습적 관례만을 따른다면 창의적 교수가 학생을 모으려면 비독창적인 강의 방식을 취하는 수 밖에 없다."[18]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고 또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언제까지나 試驗制度에 끌려 다닐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새로운 敎授方法을 導入함으로써 오히려 試驗制度의 改革을 誘導하여야 한다.

(2) 外國의 例

우리의 現實에 적합한 敎授方法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外國 法科大學에서의 敎授方法을 일별하기로 한다.

英國에서는 일부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lecture-method

(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前揭, p. 338.
(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前揭, p. 150.
(18) Jay Murphy, 前揭, p. 151.

에 의하고 있으며 다만 大學院에서는 「세미나」를 통하여 事例, 「케이스」등을 다룬다.[19]

프랑스에서는 교수가 혼자서 교과서를 읽는 식의 철저한 lecture-method를 취하지만 上級學年에서 演習科目을 必須로 하여 그 결함을 보충하고 있다.[20]

獨逸의 경우에도 lecture-method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두가지 종류의 演習을 課한다. 하나는 übung이라 하여 設例的 問題를 學生에게 주고 답안을 연습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eminare라 하여 일정한 문제에 대해 리포트를 쓰게 하는 것으로 高學年에 課한다.[21]

美國에서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case-method를 택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22] case-method란 判例를 整理한 것을 敎材로 하여 敎授의 質問과 學生의 答辯을 통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리 課題로 내어준 判例에 대하여 事實(fact)이 무엇인가, 어떠한 法的爭點(issue)이 있는가, 判決理由(reason)는 무엇인가, 다른 觀點에 선다면 어떤 判決을 내릴 수 있겠는가, 關聯判決과는 어떠한 점에서 區別될 수 있는가 등등 하나의 判例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점을 質問과 答辯을 통하여 밝혀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case-method에서는 學生들의 豫習이 必須的이며 敎授는 注入하는 것이 아니라 討論을 이끌어 가는 위치에 선다. 또한 試驗에 있어서도 무엇을 論하라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設例를 내어주고 이를 풀어가도록 하며, 여기에서는 結論이 무엇이냐보다는 모든 問題點을 찾아내었는가, 結論으로 이끌어가는 過程이 論理的인가 하는 데에 重點을 둔다.

이와 같은 case-method는 「하바아드」法科大學의 Christopher Columbus Langdell學長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1871년 그가 上級法院의 判例를 體系的으로 정리한 契約法 判例書를 출판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23] 이 case-method는 職業敎育으로서의 美國 法學敎育의 特性에부합하는 것으로서 現想的인 敎授方法이라고 말하여지나 그 나름으로의 問題點도 지적되고 있다. 即 法學을 다른 分野의 學問과 절연시키도록 조장한 면이 있고, 上級法院의 判例에 국한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 등이다.[24] 그리하여 그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되는 方法들이 이른바 problem-method, clinical-method, seminar 등

(19) 英國의 法學敎育에 관해서는 田鳳德, 「英國의 法學敎育과 法曹敎育」, 考試界, 1932, p. 32 山田幸男, イギリスの法學敎育, 法學敎育 참조.

(20) 프랑스의 法學敎育에 관해서는 Aubin, Der juristische Hochschulunterricht in Frank reich und seine Reform, 1958. Eisenmann, Les sciences sociales dans lénseignement supérieur, Droit. (UNESCO) 星野英一, フランスの法學敎育 참조.

(21) 獨逸의 法學敎育에 관해서는 Bind lie 「The German System of Legal Education and Role of Jurists, in par in the National Development」 저스티스, 1974. 12, p. 290. 참조.

(22) 美國의 法學敎育에 관해서는 Harno,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53. Brown, Lawyers, Law Schoo and the Public Service, 1948, Journal of Legal Education. 金哲洙, 「美國의 法學敎育」, 考試界, 1967. 12~1968. 6 참조.

(23) E.A. Farnsworth, 徐燉珏·朴吉俊 共譯, 美國法槪論, 1974, pp. 39~40.

(24) 上揭, p. 41.

이다.

problem-method는 실제의 또는 假定의 設例를 학생에게 주고 自主的으로 硏究시킨 다음 클래스에서 이를 토론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結論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學生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점에서 判決로서 미리 結論이 나와 있는 것을 연구하는 case-method와 다르다. 또 clinical-method란 實務能力 養成을 臨床的 훈련 방법으로, 模擬裁判(moot court)을 하고, 法律雜誌(law review)의 편집을 학생에 맡기며, 法律救助(legal aid)라 하여 빈곤한 依賴人의 相談에 응하여 어느 정도까지 事件을 처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seminar를 통하여는 硏究能力과 legal writing의 경험을 얻게 한다.

(3) 改善方向과 先決要件

종래의 一方的인 注入式 lecture-method의 폐단을 시정하고 學生들의 應用力과 創意力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美國式의 case-method 또는 problem-method를 導入하여야 한다는 것이 근래 法學者들의 一般的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全科目에 걸친 一般的인 施行에는 여러 難點이 있으므로 演習科目의 설치를 통하여 部分的으로 導入하자는 折衷論이 일반적인 것 같다.[26] 教科 課程의 改編에 관련하여 前述한 바와같이 演習科目의 설치를 통하여 case-method 및 problem-method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되 演習科目의 數를 擴大하여 基本科目에 국한하지 않고 그 대상을 넓히되 基本科目의 演習은 2·3學年에서 그밖의 演習科目은 4學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또한 일반 講義科目이라도 가급적 case-method 및 problem-method를 混合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case-method 및 problem-method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先決되어야 할 要件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演習을 위한 教材가 있어야 한다. 이에는 우리나라의 判例書 뿐아니라 外國判例의 紹介書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가 주요한 這間의 判例教材出版은 先驅的이며 괄목할 業積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性格의 作業은 韓國의 法學教育 全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汎法學教授的인 共同協力의 作業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 case-method 및 problem-method는 學生들의 豫習을 전제로 하는 만큼 學生들의 自習을 위한 충분한 圖書와 資料를 갖춘 圖書館 施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班編成(class-size)에 있어서도 討論을 위한 適正規模로 축소되지 않으면 안된다.[27] 美國 大學의 경우 seminar의 人員數는 대체로 10名內外이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演習科目의 增大에는 時間數의 增大와 아울러 教授의 確保가 있어야 한다.

(25) 예컨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前揭, p. 343.
(26) 上揭, pp. 343~4.
(27) 上揭 p. 344에 의하면 演習科目의 경우 25名이 基準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先決要件들은 모두 財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大學의 財政問題와 직결된다. 이것은 私立大學의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問題의 解決이 國家的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Ⅳ. 學制의 改革

지금까지의 論議는 現行 4年制下에서 敎育內容 및 敎育方法의 改善을 통한 實質面에서의 改革을 모색한 것이다. 4年制下에서도 改善의 餘地는 많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대로 거기에는 時間數의 增加가 절대로 필요하고 卒業 所要學點을 늘인다든가 學點當 時間數를 늘이는 方法 등을 취하더라도 거기에는 限界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다 根本的인 문제는 現在의 司法試驗制度 및 法曹制度의 閉鎖性을 깨뜨리는 制度改革을 염두에 둔 學制改革의 모색이며, 여기에는 年限 延長이 必須的이다. 學制改革에는 敎育年限 延長외에도 學科 再編成의 문제가 있다.

### 1. 敎育年限의 延長

(1) 序 說

종래 法學敎育의 年限을 둘러싸고 5年制案, 6年制案, 그리고 現行대로의 4年制案등이 주장되어 왔다. 5年制 또는 6年制案에 의하면 專門法律家의 養成을 위한 敎養敎育 및 專攻敎育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年限 延長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學界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에 대해 延長論을 現實에 맞지 않는 理想論이라는 理由로 배척하는 4年制 維持論도 있었다. 예컨대 서울 第一 辯護士會의 1969년 6월 4일자 建議文등이 그 것이다. 이같은 見解의 差異는 法學敎育의 根本理念과 具體的目的, 더 나아가서는 法曹制度 자체의 바람직한 像을 어디에 設定하느냐의 차이에서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延長論의 구체적인 細部問題로서 敎養課程 및 專攻課程을 각각 몇년씩으로 할 것인가, 敎養課程의 性格을 어떻게 규정지울 것인가 등이 論議되어 왔다.

그런데 敎育年限 延長論을 구체적으로 檢討하기 앞서 명확히 認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5年制이든 6年制이든 延長論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그와 동시에 아울러 司法試驗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敎育年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修學年限延長에 따른 어떤 形態이든간의 制度的 特典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 制度的 特典이란 곧 司法試驗制度에 있어서의 特惠 또는 司試制度 자체의 改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司試制度上의 特惠 또는 司試制度 자체의 改革없는 敎育年限 延長論은 그 자체로서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것을 실제로 實現시키기는 難望일 것이다. 年限延長이 時間과 金錢과 勞力의 投資

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投資에 대한 制度的 補償이 없이 一方的인 年限延長만을 주장하는 것은 說得力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年限延長論은 언제나 制度的 補償내지 改革과 연관하여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2) 外國의 例

具體的인 年限延長案을 검토하기 앞서 外國의 例를 일별하기로 한다.

美國에서는 法科大學(law school)의 敎育年限이 3年으로 되어 있으나, 그 入學資格이 一般大學을 卒業한 學士學位 所持者이므로 實質的으로는 7年制인 셈이다. 종래에는 法科大學 卒業者에게 法學士(Bachelor of Law)學位를 수여하였으나 近來에는 일반적으로 法學博士(Juris Doctor) 學位를 수여한다. 특히 근최에는 敎育內容을 더욱 擴充하기 위해 4年으로 延長시키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28]

美國의 경우는 法學專攻 敎育課程을 3年으로 하고 있는 데, Oxford 大學의 경우는 人文學士 課程 2年을 거친 후 法學專攻 課程 3年을 하게 되어 있어 5年制가 되는 셈이다.[29]

프랑스의 경우는 4年制이며, 3學年부터 私法學科·公法 政治學科·經濟學科로 나뉘어 진다.[30]

西獨에서는 州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7學期制를 택하고 있는 데, 따로이 長期의 法曹養成 制度를 두고 있다.[31]

벨기에의 Louvain 大學의 경우는 5年制로 되어 있으며, 敎育課程 1.5年, 專攻課程 3.5年으로 하고 있다.[32]

日本에서는 4年制로 되어 있는 데, 이중 專攻課程은 2—2.5年에 불과하기 때문에 東京大學에서는 專攻敎育의 不實을 극복하기 위해 實驗的으로 5年制를 실시하고 있다.[33]

(3) 5年制案

最近의 年限延長論은 5年制案으로 集約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의하면 法律家로서의 基礎知識을 갖추기 위하여 敎養科目 내지 隣接科目의 敎育은 不可缺하며 이를 위하여는 最少限 2年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法學專攻을 위하여는 最少限 3年이 필요하므로 5年制는 必要하고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이 案은 1971년에 韓國法學敎授協會가 주장하였고[34], 1968년[35] 및 1971年[6]에 서울法大 敎科課程 硏究委員會에 의하여, 계속하여 1974년[37] 및 1975[38]년에도 서

(28) 金哲洙, 前揭, 참조.
(29) 田鳳德, 前揭, 참조.
(30) 座談會, 「現行法學敎育과 司法試驗의 再檢討」, 法政, 1967.8. p.22.
(31) 이에 관하여는 後述 V. 司法試驗 및 法曹養成制度의 改革 참조.
(32) 李太載, 「司法制度와 法科大學에 관한 當面問題」, 韓國의 法學敎育, p.77.
(33) 鄭熙喆, 「日本의 法學敎育과 法曹養成制度 視察所感」, 法政, 1966.8. p.62. 社本公法學會·日本私法學會, 法學敎育 昭和 34. 참조.
(34) 「세미나報告書」, 1971.8.30, p.24.
(35) 「第 2 案」, Fides 1968, 10., p.4
(36) 「法學敎育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韓國의 法學敎育, p.326.
(37) 「法科大學의 學制에 관한 建議書」, 1974.7.13.
(38)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法學, 1975.12. p.145.

울法大에 의하여 주장된 바 있다.

個別的으로는 兪鎭午[39] • 高秉國[40] • 金曾漢[41] • 裵載湜[42] • 張庚鶴[43] • 李建鎬[44] • 李泰魯[45] • 崔炳煜[46] 교수에 의해 支持되었다. 또한 한 意見 調査에 의하면 應答者 161名중 81名(50%)이 5年制에 찬성하고 있는 데, 이중 法曹界 應答者 22名중 8名이 5年制에, 7名이 6年制에 贊成하고 있어 5年制를 비롯한 年限 延長論이 法曹界에서도 상당히 支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47] 다만 이것이 司試制度 내지 法曹制度의 改善을 아울러 고려한 意見 表示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5年制에 있어 敎養課程 2年, 專攻 課程 3年으로 하는 경우, 이것은 外見上 종래의 敎養課程 1年, 專攻課程 3年의 4年制에 비하여 단지 敎養課程을 1年 더 延長하는 것 뿐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되고 있다. 即 종래 4年制下의 專攻課程도 外形上 3年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의 敎科課程의 內容에 있어서 專攻敎育으로서의 法學敎育이라고 볼 수 없는 隣接 敎科目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 데 대하여, 5年制下의 專攻課程에서는 이들 敎科目을 除外하고 이것들을 2年으로 延長된 敎養課程에서 履修케 한다.[48]

또한 法大生의 募集方法과 敎養課程의 性格에 관하여도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高校 卒業者중에서 바로 法大生을 모집하여 所定期間 法科大學의 主管下에 또는 法科大學과 無關하게 敎養敎育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1974년 부터 일부 實驗大學에서 이른바 系列別募集에서 法科大學이 獨立된 계열을 가지지 않게 되어 法大生은 新入生 募集에서는 전혀 豫定되어 있지 않고 다만 社會系列에 入學하여 所定期間 敎養課程을 이수한 자중에서 法大生을 선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社會系列 共通의 同一課程에 의한 敎養敎育을 실시하게 된다. 종래의 前者의 方法을 택할 것인가 또는 일부 實驗大學의 後者의 方法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集約된 見解가 없는 것 같다. 前者에 있어서는 法學敎育과 연관된 敎養敎育을 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는데 대해, 後者는 逆으로 專攻에 구애받지 않고 廣凡한 隣接科目을 고루 섭렵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1971年의 서울法大 法學敎育制度 硏究委員會의 改善案에 의하면 後者에 찬성하면서 人文社會系列의 敎養課程 履修者에게만 法科大學 入學資格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49]

(4) 6年制案

敎育年限 延長論이 대두하기 시작한 初期에는 6年制案이 主流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39) 「法科大學의 改編을 위한 試論」, 法政, 1955. 3., p. 6.
(40) 새法政, 1971. 3., p. 19.
(41) 座談會, 法政, 1967. 8. p. 12.
(42) 「法學敎育의 近代化」, Fides, 1968. 10. 8. 4.
(43) 「司法制度와 法科大學의 面當問題」, 韓國의 法學敎育, 1971, p. 35.
(44) 「法科大學巡禮」, 法律新聞, 1975. 10. 13字.
(45) 「法學敎育의 制度的 改善을 위한 小考」, 새法政, 1971. 3. p. 19
(46) 「法科大學巡禮」, 法律新聞, 1975. 10. 13字.
(47) 法學, 1975. 12. p. 146.
(4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上揭, p. 147.

오늘날에도 많은 支持를 받고 있다. 5年制案 支持者들도 바람직하기로는 6年制가 理想的이나 다만 우리의 經濟的·社會的 諸事情을 감안하여 5年制를 주장한다고 말한다.[50]

일반적인 6年制案에 의하면, 人體病理現象 및 人間의 生命을 다루게 될 醫科敎育이 6年制로 되어 있는 점에서 보면 法學은 社會的 病理現象 내지 社會의 法秩序를 그 對象으로 하므로 그 重要性이 過少 評價될 수 없고, 專門家를 양성하는 法學敎育은 短期間으로써는 도저히 不可能하기 때문에 敎養敎育 및 專攻課程을 모두 擴充하여 6年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6年制에서 敎養·專攻課程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2—4年案이 壓倒的이다.

6年制案은 1967년 韓國 法學敎授會에서[51], 1968년에 서울法大 敎科課程 委員會에서 주장한 바 있고[52], 1973년의 中央日報 社說도 6年制를 주장하였으며[53], 個別的으로는 金哲洙[54]·李恒寧[55]·徐燉珏[56]·南興祐[57] 교수에 의해 강력히 支持되었다.

(5) 延長案의 問題點

5年制 또는 6年制의 延長案은 그 자체로서 妥當한 것이나 이를 實現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學生들의 學費 負擔의 增加가 문제된다. 둘째, 5年制 또는 6年制 卒業生에 대한 制度的 待遇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셋째, 節次的인 문제로서 年限 延長이 立法에 의해 一律的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 4年制와 5年制가 併存하는 데에서 오는 혼란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問題點들은 5年制나 6年制나 共通的인 것으로 다만 程度의 差異가 있을 뿐이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 첫째의 學費負擔 增加의 問題는 年限 延長에 대한 制度的 待遇의 改善, 即 前述한 바 制度的 特典의 부여로 相殺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셋째의 문제점은 節次的인 過渡的 문제이다. 그렇다면 가장 重要한 問題點은 修學年限 延長에 대하여 어떠한 制度的 特典을 줄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되고 있다. 即 5年制 또는 6年制 法科大學의 卒業者에게 學位에 差等을 두고, 一定한 範圍의 國家試驗(예컨대 1次試驗)을 免除한다든가 一定한 專門家的 資格을 부여하는 등의 解決 方案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58]

(6) 結　論

우리나라 法學敎育의 非正常的 現象의 根本的 病因이 前近代的인 現行 司法試驗制度 내지

(49) 韓國의 法學敎育, pp. 329—30.
(5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前揭, p. 145.
(51) 「세미나 報告書」, 考試界, 1967. 6—7 참조. 1971年의 報告書에서는 5年制로 바뀌었다.
(52) 「第 1 案」, Fides, 1968. 10. p. 4 第 2 案에서는 5年制로 바뀌었다.
(53) 1973. 9. 6字 社說.
(54) 「한 法學徒의 절실한 提言」, 月刊中央, 1970. 3 및 「法學敎育制度의 改善方向」, 서울大學校 大學新聞, 1975. 9. 8字.
(55) 「誌上公廷會」, Fides, 1968. 10., p. 17.
(56) 「法學敎育의 再檢討」, 法政, 1967. 6., p. 1.
(57) 「法學敎育, 司法試驗 및 이의 問題點」, 저스티스, 1974, p. 126.
(5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前揭, p. 146. 참조.

法曹制度의 不合理性에 있다면 우리가 追求해야 할 學制改革의 方向도 司試制度 내지 法曹制度의 改革과 연관시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法學敎育의 根本理念에 관련하여 지적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方向이 法曹職業의 普遍化를 통한 法治主義 社會의 建設에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司法試驗의 性格도 美國의 Bar Examination이나 우리나라의 醫師試驗과 같이 大學에서 엄격한 敎育方針과 學事管理아래 正常的으로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合格할 수 있도록 하고 合格者에 대하여는 辯護士 資格을 위한 實務 修習課程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그 前提로 法科大學에서의 敎育이 應當의 資格 부여에 손색없는 充實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고 이런 面에서는 6年制案이 妥當性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 司試制度 내지 法曹制度에 根本的 改革없이 단지 1次 試驗을 免除한다든지 하는 特典의 부여로 5年制를 택한다면 이것은 完全한 解決方向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法曹制度의 改革을 전제한 6年制案이 實現되기까지의 過渡的 方案으로서 5年制案이 意義를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韓國 法學敎授會나 서울法大의 改善案이 애당초 6年制案을 주장하였다가 後에 5年制案으로 변경된 것은 5年制案의 暫定的 性格을 말해 준다고 볼수 있다. 司試制度 내지 法曹制度의 前近代的 閉鎖性이 是正되지 않고 따라서 法科大學 卒業生의 대부분이 非法曹界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구태어 經濟的 負擔을 더해 가면서 까지 修學 年限을 延長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反論에 대하여, 司試制度나 法曹制度가 改善되든 안되든 어떻든 敎育年限은 法學敎育 자체를 위하여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當爲性에도 불구하고 現實的인 說得力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學科 再編成의 문제

(1) 序 說

法學敎育의 目的과 관련하여 學科編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問題가 있다. 우리의 法學敎育의 目的을 法曹人뿐 아니라 準法曹人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法律 專門家의 養成이라는 多元的 目的에 設定할 때에는 學科編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하여는 종래 法學科만의 單一 學科案, 2個 學科案, 3個 學科案 등이 주장되어 왔다.

(2) 外國의 例

美國의 法科大學은 순수한 法曹人을 양성하기 위한 職業 敎育課程으로서 學科의 區分이 없다. 따라서 單一 學科로 되어 있다.

英國 및 獨逸의 경우에도 法曹 敎育의 一元的 目的에 따라 單一 學科로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3學年 부터 私法學科, 公法 政治學科, 經濟學科로 구분되어 各學科 特有의 敎育目的에 따라 敎育內容의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東京大學 法學部는 私法

學科, 公法學科 및 政治學科의 3個學科로 編成되어 있다. 近畿大學, 福岡大學, 亞細亞大學 등의 法學部에는 法律學科 외에 經營法學科가 設置되어 있다.

(3) 우리나라의 現行制度

우리 나라에는 현재 法科大學으로 獨立되어 있는 경우와 法政大學(또는 法經大學)內의 一學科로서 法學科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法科大學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처럼 法學科의 單一 學科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59] 대부분의 경우는 法學科와 行政學科로 구성되어 있다. 法政大學 또는 法經大學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法學科외에 行政學科가 일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드물게는 法政學科라는 명칭의 學科도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는 法學 敎育과 직접·간접 관련을 가진 學科로 法學科와 行政學科(그리고 例外的으로 法政學科)가 있다. 全國 國公 私立大學(校) 總 68個중에서 法學科를 두고 있는 곳이 37個, 行政學科를 두고 있는 곳이 24個, 法政學科라는 명칭의 學科를 두는 곳이 1個校이다.[60]

行政學科의 性格에 관하여는 大學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24個大學(校)의 行政學科 중에는 名稱 그대로 行政學 敎育을 위주로 하는 學科가 있는가 하면(예컨대 延世大의 경우), 名稱과는 달리 敎育內容은 오히려 法學이 위주이고 行政學은 副次的인 곳도 있으며(예컨대 高麗大의 경우), 1975年의 統合以前의 서울大學校의 行政學科처럼 名稱과는 관련없이 公法學을 中心으로 하는 法學敎育課程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法學科가 法學敎育가의 중심이 되고 아울러 行政學科에서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4) 學科編成에 관한 諸見解

學科編成에 관하여 單一 學科案, 2個 學科案, 3個 學科案 등의 주장이 있다.

單一 學科案은 法學科만으로 法學敎育을 하자는 것인 데, 美國·英國·西獨등의 경우처럼 法學敎育은 모름지기 法學 專門敎育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個 學科案은 法學敎育을 法曹職을 위한 專門敎育과 行政府 및 企業體의 準法曹職을 위한 專門 敎育으로 크게 구분하여 2個 學科를 두자는 주장이다. 名稱에 관하여는 法學科와 行政學科, 私法學科와 公法學科, 法學科와 經營法學科 등 論者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이 주장의 근거는 法學敎育이 現實的인 社會的 需要에 응하여야 하고 社會的 需要는 크게 나누어 判事·檢事·辯護士의 法曹職에 대한 需要와 그밖의 行政府나 企業體의 法律職에 대한 需要로 區分할 수 있으며 法曹職에 대한 需要에 못지 않게 準法曹職에 대한 需要가 증대되어 가는 경향을 重視하여야 한다는 데에 두고 있다.[61]

(59) 서울대학교는 1975년의 學制改編으로 法科大學의 行政學科가 法學科에 吸收·廢止되었다.
(60)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67, pp. 440, 446.
(61) 예컨대 1974년 7월 13일, 서울法大敎授會의 「法科大學의 學制에 관한 建議書」는 私法學과 公法學科의 2個學科案을 주장하였다.

3個 學科案에 의하면 法學敎育目的과 社會的 需要의 多岐性을 감안하여 私法學科(또는 司法學科 또는 제 1 코오스), 公法學科(또는 行政學科 또는 제 2 코오스) 및 經營法學科(또는 企業法學科 또는 제 3 코오스)의 3個 學科를 두자는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法學敎育에 대한 需要를 크게 3分野로 나누어 各 分野마다 해당 職員이 다루는 法內容이나 法의 種類, 取扱方法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相異한 敎育內容을 담을 수 있는 形式으로서의 學科 區分이 필요하다는 데에 根據를 두고 있다.[62] 이 案의 特異點은 經營法學科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 데, 이는 經濟發展의 高度化와 더불어 企業이 중요한 法的 主體로 등장하게 되고 企業의 對內的·對外的 活動에 관련된 法規가 不斷히 증대되어 가는 경향을 중시할 때에 이 企業 活動에 있어서 필요한 法律知識을 종래의 法學科나 行政學科라는 形式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다는 데서 그 根據를 찾으려고 한다.[63] 한 提案에 의하면 經營法學科의 具體的인 敎科目內容에 관하여 必須科目으로 商法·民法(親族·相續論제외)·行政法·稅法·勞動法·形法·國際去來法·法會計學·原書講讀·財務管理·憲法·商事慣習法이나 自治法規論을 두고, 選擇 科目으로는 法制司法社會學·法醫學·EDPS·比較法·破產法·會社整理法·社會保障法·工業所有權法·金融法證·券去來法등이나 그밖에 國際關係論·經濟史·政治史·經濟政策등의 敎科目이 최소한의 選擇範圍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64]

(5) 結　論

單一 學科案은 前述한 바와 같은 司試制度의 改革이나 6年制案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할때 가장 妥當한 見解이다. 이에 대하여는 現實的으로 韓國의 法學敎育履修者 중에서 극소수만이 法曹界 進出에 成功할 뿐, 대다수의 卒業生이 行政府·企業體에 進出함으로써 敎育의 效果가 半減된다는 現實을 外面한 것이라는 反論이 가능하다. 그러나 見解에 따라서는 學生들의 社會進出 實態나 社會的 需要를 고려하더라도 구태어 여러 學科로 區分할 필요없이 單一學科를 두면서도 選擇科目의 擴大, 副專攻制나 他學科受講의 認定 등에의해 同一한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2個 學科案에 대하여는 論者에 따라 焦點을 달리하여 學科의 性格·名稱을 달리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社會的 需要를 法曹職과 準法曹職으로 兩分하는 것이 반드시 合理的이 아니며, 行政職의 需要를 강조하면 企業體의 需要를 외면하게 되고 반대로 企業體의 需要를 강조하면 行政職의 需要를 외면하게 된다는 難點이 있다.

3個 學科案의 결정적인 問題點은 學生들이 社會 各 部門의 多岐한 需要에도 불구하고 在學中 法曹界進出로 그 志望이 집중될 경우 다른 學科의 存在 意義가 없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

(62) 예컨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前揭, pp. 332—4 참조.
(63) 徐燉珏, 「經營法學의 提唱」, 노모스, 1968. 12 卷頭言. 徐燉珏, 「經營法學論」, 司法行政, 1970. 8. 참조.
(6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前揭, pp. 341—2 참조.

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實際的으로 企業體 進出을 지망하는 學生들은 대개 經營學科나 經濟學科에 지망하고 法學科 學生의 대부분은 애당초 法曹界나 行政界를 지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多岐한 社會的 需要에 응하는 데에는 반드시 여러 學科의 설치에 의하지 않더라도 單一學科를 두면서도 다양한 選擇科目을 설치하고 副專攻制나 他學科 受講 認定 등의 방법에 의해 의해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司法制度의 改革을 전제할 때의 궁극적인 방향은 法學科 單一 學科案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이 경우 行政學敎育 위주의 行政學科 設置의 필요성 여부는 別問題이다.), 다만 現實的으로 2個 또는 3個學科案이 그 立論이 根據를 가지나 그 취지에 따른 學生들의 呼應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 Ⅴ. 國家試驗制度의 改革

大學의 法學敎育이 國家試驗制度, 특히 司法試驗制度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만큼 法學敎育의 改善·强化가 國家試驗制度의 改革을 先行要件으로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모든 문제를 國家試驗 制度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문제에 따라서는 예컨대 敎育內容이나 方法의 改善처럼 姿勢에 따라서는 法學敎育이 主導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敎育年限의 延長 문제같이 性質上 試驗制度의 改革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부문도 있다. 以下 國家試驗制度 특히 司法試驗制度에 있어서 法學敎育과 直結되어 있는 문제를 再考해 보고 아울러 行政考試制度에 대해서도 言及한다.

### 1. 現行 司法試驗制度의 問題點

종래 司法試驗制度의 問題點으로서 試驗 施行機關·試驗委員의 構成·出題와 採點 方式·合格者數·受驗資格·試驗科目·口述試驗등 여러 문제가 論議되어 왔다. 그간 이들 문제점 중에서 部分的으로 改善된 점도 있으나 가장 決定的인 重大한 問題이면서 아직도 그基本 性格上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첫째, 合格者數, 둘째, 出題方式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에 이들두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合格者數

司法試驗을 資格制로 하느냐 定員制로 하느냐, 員定員制로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그간 數次의 變更을 거쳐 왔다. 現行 司法試驗令에 의하면 "제 2 차 시험의 합격 인원은 매시험 시행시에 총무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제 3 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近來에는 每年 60~80名씩 선발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보다 약

〈表 15〉 司法試驗 回別 合格者數

| 回別 | 出願者數 | 1次試驗 | 2次試驗 | | 1次出願者對比 2次合格率 |
|---|---|---|---|---|---|
| | | 合格者數 | 應試者數 | 合格資數 | |
| 1 | 4176 | 1471 | 2115 | 41 | 0.98 |
| 2 | 3732 | 1205 | 2530 | 45 | 1.20 |
| 3 | 4969 | 781 | 1848 | 10 | 0.20 |
| 4 | 4214 | 461 | 1186 | 22 | 0.52 |
| 5 | 2141 | 475 | 408 | 16 | 0.75 |
| 6 | 2370 | 470 | 756 | 19 | 0.80 |
| 7 | 2820 | 496 | 895 | 5 | 0.18 |
| 8 | 2466 | 473 | 779 | 83 | 3.37 |
| 9 | 2599 | 447 | 736 | 37 | 1.42 |
| 10 | 2873 | 629 | 750 | 34 | 1.18 |
| 11 | 2561 | 520 | 930 | 33 | 1.28 |
| 12 | 2786 | 762 | 944 | 50 | 1.65 |
| 13 | 2776 | 420 | 967 | 80 | 2.29 |
| 14 | 3514 | 177 | 829 | 80 | 2.05 |
| 15 | 4072 | 430 | 787 | 60 | 1.31 |
| 16 | 4010 | 498 | 705 | 60 | 1.46 |
| 17 | 4119 | 424 | 547 | 60 | 1.31 |

※ 자료 : 考試硏究 20號

간 증가 한 數字이나 基本的으로 司法試驗制度의 閉鎖的 性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종래와 다를 바 없다. 〈表 15〉에서 보는 것처럼 最近까지의 司試 合格率은 불과 평균 1,125%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合格者數가 적음으로 해서 오는 弊端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첫째로, 이것은 法治國家가 요청하는 法의 大衆化에 逆行하는 것이다. "國民이 法에 의지하고 신뢰하여 法이 참으로 自己生活의 安定을 위한 방패임을 認識하고 法의 生活化를 實現하는 捷徑은 法의 大衆化라고 할 수 밖에 없는바, 現行 司法試驗制度는 法曹人 輩出의 지나친 數的統制와 그로 인한 法曹人의 稀少價値 認識에 의한 特權 階級化現象을 일으킴으로써 法의 大衆化를 방해하고 있다."[65] 둘째, 100 : 1에 육박하는 競爭率로 인해 해마다 누적되는 낙방자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個人的 問題로 가볍게 돌려버릴 일이 아니며 國家的인 人力의 浪費인 동시에 커다란 社會問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大學의 法學敎育과 관련된 폐단으로서 심한 경우 1學年에서 부터 試驗準備에 몰두하게끔 함으로써 體系的인 學校敎育을 形式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2) 出題 方式

(65) 韓國法學敎授會, 「세미나報告書」, 1967. 4. 1. 2.

司法試驗制度의 또 하나의 큰 盲點은 그 出題方式에 있다. 現行 司法試驗令에 의하면 試驗은 第1次, 第2次 및 第3次 試驗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데, 第1次 試驗은 選擇型을 원칙으로 하되 記入型을 혼용할 수 있으며, 第2次 試驗은 主觀式 論文型으로 하고, 第3次 試驗은 面接試驗으로 한다. 그리고 同令 第10條에 의하면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술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 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合格의 決定的 關門으로 되어 있는 第2次 試驗의 出題方式이다.

종래 論文型 試驗의 出題方式을 보면 극히 예외적인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 무엇을「論하라」무엇 무엇을「說明하라」는 式의 전통적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記憶量의 테스트에 불과하며 問題 發見能力, 推理力, 分析力, 說得力을 테스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66] 또한 試驗에 있어서 應試者는 試驗에서 要求하는 學力이 어느정도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司法試驗에 무난히 合格하려면 어느 정도의 答案을 써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67] 종종 最高得點者의 입에서 合格 여부 조차 자신이 없었다는 말을 듣는 수가 있는 데, 이같은 出題 方式에 있어서는 그것이 겸손의 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主觀式 論文型의 出題方式은 法律家로서 구비하여야 할 資質 所有者를 선택하는데 不適當할 뿐만 아니라, 大學의 法學敎育을 非正常化하게 하는 가장 큰 原因의 하나이다. 이러한 出題方式下에서 學生들이 쉽게 合格하기 위하여는 學校講義 보다도 조용한 讀書室이나 寺刹에 들어 박혀 非凡한 忍耐속에 科目마다 豫想問題를 골라 模範答案을 작성하여 暗記하는것이 보다 效果的이라고 하지 않은 수 없고 이렇게 되면 大學의 法學敎育은 形式化할 수 밖에 없게 된다. 現行方式의 試驗에 대하여는 正常的인 授業만을 받은 法科大學 卒業生이 틀림없이 合格한다는 다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는 優秀한 學校成績의 學生이 낙방하는 예가 적지 않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3) 其 他

그밖에 法學敎育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受驗資格과 資格試驗 科目에 관한 문제가 있다.

受驗資格에 관하여 現行 司法試驗令에 의하면 아무런 學歷에 관한 制限도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은 司法試驗 應試資格과 大學의 法學敎育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大學敎育을 받지 못하는 獨學者에게 機會를 주어야 한다는 動機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나 그 副作用은 적지 않은 것이다. 우선 大學의 法學敎育은 크게 영향받게 된다. 學生들은 正常的인 法學敎育을 도외시하고 初級學年부터 試驗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하여 隣接 社會科學科目은 물론 試驗科目이 아닌 法律科目도 등한히 하게 되며, 요컨대 大學의 法學敎育은 形式化

(66) 朴秉濠,「國家考試制度와 法學敎育의 非正常化」, Fides, 1968. 10, p. 6.
(67) 金致善,「司法試驗의 問題點」, 韓國의 法學敎育, pp. 210—11.

〈表 16〉 現 行 司 法 試 驗 科 目 表

| 제 1 차 시험과목 (8) | | | | 제 2 차 필기 시험과목 (8) |
|---|---|---|---|---|
| 필 수 과 목 (5) | 선택과목 (3) | | | |
| | 제 1 선택 (1) | 제 2 선택 (1) | 제 3 선택 (1) | |
| 헌 법<br>민 법<br>형 법<br>경제학개론<br>문 화 사 | 국 제 법<br>국제사법<br>사 회 법<br>형사정책<br>(행형학포함) | 정 치 학<br>사 회 학<br>심 리 학<br>법 철 학 | 외국어 (영어·독어·불어·일어·중국어중 택1) | 헌 법<br>행정법<br>상 법<br>민 법<br>민사소송법<br>형 법<br>형사소송법<br>국 사 |

내지는 기껏해야 司試準備 補助課程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法學敎育에 악 영향을 줄 뿐 아니라 司法試驗 자체를 위하여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大學敎育과 절연된 現行 司試制度는 광범한 敎養과 基礎知識을 갖추 民主的 法律家로서의 資質 所有者를 選擇하는 데 不適當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試驗科目에 있어서 現行令에 의하면 〈表 16〉에서 보는 것처럼 第1次 試驗에서 必須 5個 科目 및 選擇 3個 科目을 포함한 8個 科目, 第2次 試驗에서 必須 8個科目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1972년 10월 30일의 改正令 以前보다는 1次 必須科目에 있어 2個 科目이 增加한 것이며, 1972년 6월 8일의 改正令 以前보다는 1次 必須科目에서 2個 科目, 2次 必須 科自에서 1個 科目(國史)이 增加한 것으로, 試驗科目數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여러 意見과는 逆行되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것은 受驗資格에서 學歷制限을 철폐한데 따른 것으로 볼수있으나 學生들에게 負擔을 加重함으로써 더욱 試驗에만 몰두하게 하고 따라서 學校에서의 正常敎育을 形式化하게 하는 要因을 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應試者의 대부분이 大學生 또는 大學卒業生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大學敎育을 無視 내지 不信하는 결과로도 되는 것이다.

## 2. 外國의 司法 試驗 制度

### (1) 美 國[68]

辯護士의 資格을 얻기 위하여는 各州의 辯護士會(Bar Association)에서 관장하는 辯護士 試驗(Bar Examination)에 合格해야 한다. 受驗資格에 관하여는 各州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美國 辯護士會(American Bar Association)가 公認한 法科大學(Law School) 卒業生임을 요한다. 出題方式은 대개 假想的인 事例를 주고 이를 풀게하는 方法에 의한다. 學部에서의 4年, 法科大學에서의 3年, 도합 7年의 긴 修學年限과 法科大學에서의 엄격한 트레

(68) Brown, op. cit.,; Harno, *op.cit.*,; Farnsworth, *op. cit.* 참조.

이닝을 거치게 하는 대신 應試者의 70~80%가 合格한다. 合格者에게는 辯護士 資格만이 주어진다.

州의 判事는 대부분 選擧制度에 의하여 選出되며 聯邦法院의 判事는 大統領이 上院의 同意를 받아 任命하는데, 辯護士로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중에서 學識과 經驗이 우수한 者를 任用한다. 判事職은 대단히 명예스럽고 존경받는 職으로 인식되고 있다. 檢察官도 辯護士중에서 任命 또는 選出되는 점은 判事의 경우와 동일하나 社會的 地位가 높지 않은 관계로 그다지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

(2) 西 獨[69]

西獨에서는 13年間의 初·中等 敎育을 마치고 大學入學檢定考試에 合格한 사람만이 大學에 進學할 수 있다. 在學中에는 學科試驗등이 전혀 없고 卒業證書 같은 것도 없다. 대체로 7學期를 마치고 第1次의 國家試驗을 친다. 이것을 司法官 試補試驗(Referendar examen)이라고 한다. 이 試驗은 各州가 獨自的으로 시행하는데 대체로 大同 小異하다. 이 試驗은 2回까지만 應試할 수 있고 合格率은 約 80% 정도이다. 이 第1次 國家試驗에 합격하면 ① 法曹人이 되는 코스와 ② 學者가 되는 코스와 ③ 중급의 행정관·회사원으로 되는 코스로 진로를 정하게 된다. 대부분은 ①의 코스를 택하는데 司法官 試補로서 3年 6個月間 實務修習을 거친 후 第2次 國家 試驗을 친다. 이를 司法官 試驗(Assessorexamen)이라고 한다. 이 試驗도 各州가 主管하며 3回까지만 應試할 수 있다. 合格率은 全國平均 약 86% 정도이다. 各格者는 完全 法曹人(Volljurist)이라 부르며 本人의 希望에 따라 行政官, 判事, 檢事, 辯護士 또는 其他의 法律職에 進出할 수 있다. 判事希望者는 우선 豫備判事로 任命되어 약 3年 經過後 그 適性을 감안하여 終身職 法官으로 任命될 수 있다.

1972年의 경우를 보면 第2次 國家試驗 合格者 3,243名 중에서 23.2%가 判·檢査職에, 22.5%가 行政職에, 25%가 開業 辯護士로, 10%가 會社의 法律顧問에, 나머지 20%가 一般經營職에 진출하고 있다.[70]

(3) 日 本[71]

日本의 司法試驗制度는 우리나라와 매우 類似하다. 다만 合格者數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批判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대체로 평균 60점을 기준으로 每年 약 500名을 合格시키는데, 1970年의 경우 競爭率은 약 40 : 1이었다.[72] 應試 資格으로 大學의 一定 學年以上의 修了를 요하며, 試驗方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2·3次 試驗에 의한다. 合格者는

(69) Bindseil, *op. cit.*, 참조.
(70) *Ibid.*, p. 296.
(71) S. Tsukamoto,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of Law in Japan」 저스티스, 1974. 12. p. 19 以下 ; 金致善前, 揭, p. 197.
(72) 法學セミナ, No. 177, p. 135.

最高 裁判所에 설치된 司法硏修所에서 2年間 實務修習을 받은 다음 希望에 따라 判事補 또는 많은 副檢事로 任命되며 辯護士가 되기도 한다. 制度를 실시한 初期에는 대부분이 法官職을 지망하였으나 近來에는 70~80%가 辯護士職을 희망하고 있다. 判事補制度는 1967年의 裁判所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司法硏修所를 修了한 후 바로 判事가 되는 것이 아니라 判事補가 되어 10年間 더 경력을 쌓아야 判事가 되는 制度로서 判事補는 單獨 裁判을 할 수 없으며 3人의 合議體의 구성원 중에서 2人의 判事補를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운영과 정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現在는 特別法에 의해 判事補로 5年以上 근무한 者는 特命에 의해 單獨으로 재판할 수 있고, 高等裁判所 判事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司法試驗制度의 改善方向

앞에서 지적한 現行 司法試驗制度의 問題點 및 外國의 例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方向의 改善의 요망된다.

첫째, 많은 論者들이 주장해온 것 처럼 合格者數가 擴大되어야 한다. 美國의 例는 차처하고라도 西獨의 경우 每年 3000餘名이 넘는 Assessor가 배출되고 日本에서도 500餘名씩의 合格者를 내는 데 비하여 每年 60~80名에 不過한 우리의 法曹 人口 供給은 확실히 過少하다. 人口 比例로 보더라도 人口 10萬名當 法曹人의 數는 美國이 162名, 西獨이 82名, 英國이 46名, 日本이 10名인 데 우리의 경우는 불과 4名에 불과하다.[73] 判·檢事의 定員 자체를 增員하여 判·檢事의 業務量過多에서 오는 폐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訴訟遲延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重要한 문제로 辯護士의 絶對數를 대폭 증가시키고 辯護士의 職域을 확대하여 國民的 次元에서 法의 生活化를 도모시켜야 할 것이다.

或者는 불과 700餘名의 開業辯護士만 가지고도 辯護士人口 過剩云云하나 無辯護士村이 許多할 뿐만 아니라, 經濟規模의 확대와 더불어 先進國의 例에 비추어 辯護士가 개척할 수 있는 活動分野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며, 또한 모든 辯護士가 반드시 開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사고 방식이 아닐 수 없다. 辯護士數는 실제의 需要에 응한다는 面 뿐 아니라 法의 大衆化라는 관점에서 需要를 創出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一部에서는 司試 合格者數를 늘릴 경우 質的 低下의 우려를 말하나, 과연 前述한 바이 論述型 試驗의 方法으로 어떤 能力이 테스트될 것이며 合格點數에서 數點 不足한 應試者들과 合格한 者와의 사이에는 어느 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實力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質의 低下의 우려가 있더라도 少數 獨占的利益의 保障下에서가 아니라 多數의 競爭속에서 質이 向上되고 多數속에서의 選擇이 質의 向上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할것이다. 같은 專門家 資格授與를 위한 國家試驗인 醫師試驗이나 藥師試驗과의 엄청난 不均

(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前揭, p. 161.

衡은 어떻게 說明될 수 있는 것인가.

合格者數를 늘이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見解가 一致되어 있지는 않다. 생각컨대 6年制로 敎育年限을 延長하고 敎育內容의 充實化를 전제로 할 때에는 美國이나 西獨의 例처럼 正常的인 法學敎育을 받은 卒業生의 거의 모두가 合格되어야 할 것이다.[74] 이러한 制度를 채택하는 경우에 合格者에 대한 待遇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前述한 바 西獨式의 制度와 美國式制度 사이에 見解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67年의 韓國 法學敎授會의 세미나 報告書에 의하면, 6年制下의 卒業生에게 國家試驗을 거쳐 法律 實務家로서의 資格을 부여하되, 다만 여기의 資格賦與는 現行 司試合格者에게 判·檢事·辯護士의 資格이 함께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英美法律系의 司法制度의 改革이 實質的으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거기에 부합하는 資格의 부여를 뜻한다고 한다.[75] 이것은 美國制度에 유사한 것이다. 한편 1969年의 서울法大 敎授會案에 의하면, 5年制下의 卒業者에게 國家試驗인 法理士試驗에 응시케 하고, 그 合格者에게 司法大學院 入學의 應試資格을 주며, 司法大學院 卒業者에게 法學碩士學位를 수여하고 이들에게만 司法試驗에 응시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 데[76], 이는 西獨式에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現行 4年制下에서도 合格者數를 增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判·檢事 定員의 充員이라는 측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前述한 바 여러 필요성을 고려하여 辯護士 資格者 數를 절적대으로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意見調査에 의하면 司試合格者를 늘리는 경우의 人員數에 관하여 35%가 100名에, 31%가 200名에, 16%가 150名에 5%가 300名에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76]

둘째, 出題方式에 있어서 2次 試驗의 論述型方式을 止揚하고 이른바 케이스 方式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美國에서의 出題方式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에 의하면 假想의 케이스를 出題하여 法律關係의 分析을 求하는 데, 다음과 같은 能力이 評價된다.

우선 주어진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爭點을 빠짐없이 抽出해 내는 能力이다. 評點에 있어서는 이것에 1/3 내지 1/2 까지의 웨이트가 주어지는 것이 通例이다. 이것은 法曹人의 基本的인 條件은 모든 可能性을 하는 豫見하는 능력에 있다는 前提에 서기 때문이다. 다음에 모든 爭點에 대하여 모든 可能한 解釋을 構成하는 能力이다.[77] 셋째로 모든 可能한 見解에 대하여 判斷을 내리고 이를 說得하는 能力이다. 法學敎育의 方向도 이러한 諸能力을 함양하는 데 力點이 두어져야 한다.

또한 暗記式·注入式 공부 방법을 지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第3次 試驗인 口述試驗도 좀 더

(74) 同旨, 南興祐, 法律新聞, 1975, 9.8字 ; 金哲洙, 서울大學校 大學新聞, 1975, 9.8字, 참조.
(75) 韓國法學敎授會編, 韓國의 法學敎育, pp. 199—200.
(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法學敎育의 改善方向」, 前揭, p. 161.
(77) 朴秉濠, 前揭, p. 6, 참조.

實質化할 필요가 있다. 口述 試驗을 통하여 受驗者의 法理論의 理解 程度, 消化 程度를 判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法曹生活에서 口頭를 통한 法律事務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對話를 통한 表現能力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셋째, 受驗資格에 있어서 法學專攻의 學生에 국한하여야 한다. 6年制下에 거의 모든 應試者를 合格시키는 制度下에서는 당연히 法學專攻의 卒業者에 한정시켜야 할 것이고, 現 學制 아래서도 合格者 數를 대폭 늘리는 改善과 함께 최소한 法學專攻 3學年 修了者를 資格 要件으로 하여야 한다. (兵役 問題를 고려할 때 반드시 卒業者를 資格 要件으로 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司法試驗과 大學의 法學敎育을 制度的으로 連結시켜, 法學敎育이 形式化하는 폐단을 시정하고 均衡 잡힌 知識의 所有者로서의 法曹人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見解에 대하여는 大學學歷이 없는 사람 및 他學科 出身에게 機會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反論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合格하는 例가 통상 合格者의 10% 未滿으로 적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로 司法試驗은 어디까지나 專門家 資格試驗이며 과거의 科擧制度나 行政考試 같은 高位官吏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醫師試驗을 누구나 應試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正規 醫科大學에서 醫學을 전공한 者에 한하여 응시하도록 하는 制度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美國·西獨에서도 法曹人 資格으로 法科大學卒業을 요구하고 있고 日本에서도 大學의 一定 學年 以上의 修了를 응시 자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法學專攻 學生에 국한하지는 않으면서도 大學의 學年 修了者 및 修了 豫定者 또는 司法行政要員 豫備試驗 合格者에 한정하였었다. 그리고 受驗資格을 法學專攻의 學生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全國의 法科大學과 法學科에서의 法學敎育이 再整備·强化하여야 할 것이다.

4. 行政考試 制度

法學敎育과 관련하여 行政高等考試의 문제점도 論議될 필요가 있다. 行政 公務員이 다루는 業務가 高度의 法律知識을 요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法學 專攻者들이 高級公務員을 지망하고 있으므로 法學敎育과 行政考試의 關聯性도 過少 評價될 수 없다. 西獨에 있어서 司法官 資格과 高級行政官 資格을 구별않음은 시사하는 바 있다.

現行 行政考試制度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試驗科目의 문제로 보인다. 行政考試는 司法試驗과 달리 基本性格上 專門家 資格試驗이 아닌 점에서 受驗資格도 널리 開放되어 있는 만큼 試驗科目의 性格도 關聯分野에 대한 一定水準의 知識을 요구하는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試驗科目의 選定이나 數에 있어서 一般 基本科目에 국한하는 方向에서 數的으로도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表 17〉의 現行 試驗科目表를 보건대 2次試驗에서 憲法科目이 새로이 포함되고 財政學은 1次試驗의 科目으로 되었다. 憲法科目은 高級公務員의 性格

에 비추어 꼭 필요한 科目이라 할 수 있고 客觀式의 1次試驗으로는 不足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절한 改正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選擇科目에 있어서는 大學에서의 廣凡한 專攻分野를 반영하여 範圍를 擴大하는 반면 科目數는 1個 科目으로, 줄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表 17〉 現行 行政考試 試驗科目

| 제 1차 시험과목 (4) | 제 2차시험과목 (6) | | |
|---|---|---|---|
| | 필 수 (4) | 제 1선택 (1) | 제 2선택 (1) |
| 민 법 총 칙 | 행 정 학 | 국 제 법 | 회 계 학 |
| 재 정 학 | 행 정 법 | 상 법 | 통 계 학 |
| 영 어 | 경 제 학 | 노 동 법 | 경 영 학 |
| 국 사 | 헌 법 | 정 치 학 | 조사방법론 |

## Ⅶ. 餘 論

### 1. 大學院 敎育

근래 大學院 敎育을 전반적으로 再整備·强化하여야겠다는 論議가 활발하여지고 大學院 中心大學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大學院 課程의 法學敎育에 관해서도 各大學別로 그 運營을 改善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大學院 課程의 法學敎育은 少數의 法學者 志望生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敎育의 實際에 있어서는 正規的이고 體系的 講義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個別指導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이 事實이다. 近來 數的擴充과 더불어 專攻分野의 細分化·敎科 課程의 再整備 博士課程의 開放등을 통하여 整備作業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고무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外的 整備에 상응하는 內的充實이라는 면에서는 큰 盲點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직도 學生數에 있어 小規模에 그침으로 해서 體系的이고 本格的 講義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學生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學生의 대부분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즉 兵役延期의 特典을 받아 在學期間을 司法試驗 準備期間으로 이용하기 위해 大學院에 入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컨대 大學院 課程의 法學敎育을 살리는 길은 이를 法學者의 養成課程으로서 뿐만 아니라, 旣成 法曹 또는 準法曹人의 專門家的 素養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再敎育의 場으로 活用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것은 再敎育 자체의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大學院 法學課程의 敎育·硏究 분위기에 활기를 넣고 그 水準을 向上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再敎育은 大學과 社會를 보다 接近시키며 實務家와 學者와의 交涉을 통하여 理論과 實際의 調和시키고 相互 補完케 한다는 점에서 큰 意義가 있으며, 특히 現代 法學이 보다 專門化·細分化해 가고 現實問題의 解決에 관심을 증대시켜 가는 傾向과도 合致하는 것이다.

또한 大學側으로서는 硏究 雰圍氣에 活氣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大學의 遊休施設의 活用과 이를 통한 社會에의 寄與라는 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周知하는대로 歐美 各國에서는 夜間 또는 放學 期間을 이용하여 旣成 法律 職業人에게 再敎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美國의 경우 Law School의 Graduate Program에는 많은 旣成 實務家들이 受講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現職人들을 위하여 一般 大學院 學生과는 달리 夜間 碩士課程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放學期間을 이용한 「세미나」 課程도 유용할 것이다.

### 2. 學生活動과 法律相談

法學專攻學生들의 學生活動의 一環으로서 法律相談(Legal Aid Service)을 담당케 하는 것은 일종의 clinical method로서 學生들의 法學的 能力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社會 參與의 의미도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延世大學校에서 1969年 以來 法律問題 硏究所를 통하여 學生들이 法律相談 活動을 하여 왔고[78], 과거 司法大學院에 附設·運營되었던 法律 相談室도 成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에 있어서 法律相談을 學生들에게 일임하는 것은 學生들이 學業途上인 만큼 어려울 것이며 敎授들의 組織的인 指導活動과 學校當局의 物的支援이 필요할 것이다.

## Ⅶ. 結　　言

지금까지 法學敎育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대하여 종래의 諸論度를 綜合, 이를 批判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法學敎育 改善의 문제는 그에 附隨하는 복잡한 諸問題로 하여 단순한 法學界만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 實踐도 그만큼 어렵게 됨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다.

學界가 主導할 수 있는 문제인 敎育內容 및 方法의 改善에도 여러 현실적인 障碍가 있다. 敎育內容의 擴充을 위한 演習科目의 增設과 새로운 科目의 設置에는 時間數의 增加와 함께 충분한 敎授要員의 擴保가 先決問題이며, 여기에는 財政的 뒷받침이 필요하다. 敎育方法의 改善을 위한 判例·演習 敎材의 開發과 圖書館 施設의 擴充도 財源確保를 전제로 한다. 결국 敎育內容·方法의 改善에는 財政問題의 解決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 데, 여기에는 國家로부터의 支援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중에서도 敎材의 共同 開發을 위한 財政支援이 가장

(78) 李根植, 「法大生의 意識과 活動」, 韓國의 法學敎育, p. 168.

時急하다고 하겠다.

教育年限 延長과 司法制度 改革은 보다 어려운 問題이다. 兩者는 必然的으로 相互聯關되어 있고 利害衝突로 인한 關係 各界의 見解對立의 해소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決定的인 障碍는 意識의 問題이다. 法·法制度·法學·法學教育에 대한 前近代的 思考方式의 불식이 없이는 해결은 難望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法의 大衆化·生活化의 理念이 야말로 모든 論議의 出發點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意見調整과 具體的 代案의 작성을 위하여서는 學界·法曹界를 망라한 研究機構의 設置가 필요할 것이다.

# Problems on the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Korea

**Kim, Uk Kon**
**Park, Kil Jun**

There seems to have been little progress in legal education in Korea, despite continued efforts by those interested since 1960s. At this point, we feel it necessary to reconsider the matter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is regard, it would be meaningful to devide problems into two categories, i.e., reform measures under the present four-year program and those under the proposed five or six-year program.

Even under the present law school system,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First of all, concerning the teaching method, traditional lecture-method must be changed into case-method or problem-method. In prepartion for such change it would be indispensable to develop casebooks and other necessary materials. Also, the present exam-method of the national bar exam should be changed. Perhaps all evils in our legal education are mainly due to the essay-style exam-method, which requires only memory work instead of practical application ability.

Besides, changes in the curriculum must be made toward greater realism and functionalism. The increase in absolute numer of courses offered is needed, and new courses should be offered as society progresses and legal science develops. Also, as a means of reform of teaching method, the number of seminar hours must be increased.

It should be admitted, however, that there are some limits to the reform under the present four-year program. Therefore, the extention of law school years is required for the complete reform. Though six-year program is most desirable, to put it into practice, the drastic change in the national bar exam system is prerequisite to that. Especially, among others, the number of passers in the national bar exam should be increased to the extent that most law school graduates could be lawyers. The main obstacle to such change seems to lie in the consciousness of those concerned.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the law profession is no longer a previleged class. It might be said, in this regard, that the key question is to recogniz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legal education from the democratic viewpoint.